
주요업무 보고

2015. 11. 1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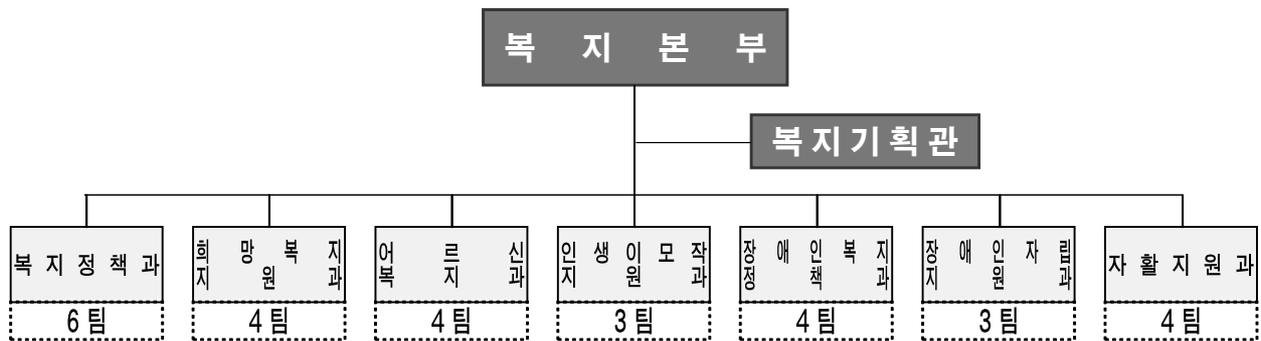
복지본부



I. 일반 현황

1 조직 및 인력 ('15. 10월말 기준)

조 직 : 1 기획관 7 과 28 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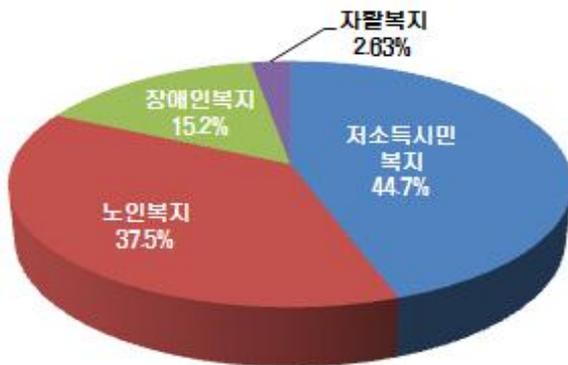
인 력 : 정원 138명 / 현원 137명

| 구 분 | 계 | 행정직 | 기술직 | 관리운영직 | 임기제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계 | 138 / 137 | 129 / 126 | 5 / 5 | 3 / 5 | 1 / 1 |
| 복지정책과 | 36 / 36 | 33 / 34 | / | 2 / 1 | 1 / 1 |
| 희망복지지원과 | 19 / 20 | 19 / 20 | / | / | / |
| 어르신복지과 | 22 / 23 | 18 / 19 | 3 / 3 | 1 / 1 | / |
| 인생이모작지원과 | 11 / 10 | 10 / 9 | 1 / 1 | / | / |
| 장애인복지정책과 | 18 / 19 | 18 / 18 | / | / 1 | / |
| 장애인자립지원과 | 16 / 15 | 15 / 13 | 1 / 1 | / 1 | / |
| 자활지원과 | 16 / 14 | 16 / 13 | / | / 1 | / |

□ **예산 : 4,661,776백만원** (의료급여특별회계 852,900, 도시개발특별회계 3,619)
 (단위 : 백만원, %)

| 구 분 | 예산현액 | 집행액 (*15.10.31 기준) | 집행률(%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계 | 4,661,776 | 3,920,971 | 84.1% |
| 행정운영경비 | 679 | 421 | 62.0% |
| 재무활동 (타회계전출금·반환금) | 436,351 | 381,900 | 87.5% |
| 사업비 | 4,229,405 | 3,538,650 | 83.7% |

〈 분야별 사업비 〉



| 구 분 | 예산액(억원) | 비율(%)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합 계 | 42,294 | 100.0 |
| 저소득시민복지 | 18,882 | 44.7 |
| 노인복지 | 15,867 | 37.5 |
| 장애인복지 | 6,435 | 15.2 |
| 자활복지 | 1,110 | 2.6 |

□ **기금 운용 : 2개 기금 324,090백만원** (단위 : 백만원)

| 기금명 | 2015년 기금운용 규모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계 | 재정 투융자금 | 예치금 (요구불예금) | 고유목적 사업비 | 융자금 | |
| 총 계 | 324,090 | 302,134 | 8,394 | 5,712 | 7,850 | |
| 재난관리기금 (구호계정) | 267,271 | 265,314 | 1,148 | 809 | - | |
| 사복지 회지금 | 소 계 | 47,787 | 36,820 | 4,124 | 1,993 | 4,850 |
| | 노인복지계정 | 16,047 | 14,000 | 1,126 | 921 | - |
| | 장애인복지계정 | 21,207 | 14,400 | 1,752 | 805 | 4,250 |
| | 자활계정 | 10,533 | 8,420 | 1,246 | 267 | 600 |

II. 정책목표 및 과제

당당하게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

- 피부에 와 닿는 질 높은 복지정책 시행으로 체감도 제고-

사각지대는 없다!

- 찾아가는 복지실현

100세 시대!

- 50부터 인생 2막 출발

장애없는 일상!

- 장애인 인권·일자리 증진

주요 업무

- 과제 1 찾아가는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
- 과제 2 어르신이 더 행복한 도시 조성
- 과제 3 장애인의 당당한 자립 생활 지원
- 과제 4 노숙인·쪽방주민 복지서비스 확대

실행 전략

- ◇ 정책 수립·집행·평가 등 전과정에 복지거버넌스 구축
- ◇ 직원들의 창조적 업무개발 및 능동적 업무처리 지원
- ◇ 새로운 복지정책 수요예측 및 선제적 시책 발굴 시행

Ⅲ. 주요업무 보고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찾아가는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| 7 |
| 2. 어르신이 더 행복한 도시 조성 | 11 |
| 3. 함께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자립 도시 실현 | 15 |
| 4. 노숙인·쪽방주민 복지서비스 확대 | 19 |

1. 찾아가는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

① 현장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 강화

②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

③ 사회복지인프라 관리·지원 강화

■ 현장중심의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

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시민참여형 복지문화 확립

1

현장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 강화

찾아가는 복지실현 본격 추진

- 1단계 사업 시행 : 13개구 80개동('15.7.1~)
 - 전 동 시행 : 4개구 61개동(성동, 성북, 도봉, 금천)
 - 일부동 시행 : 9개구 19개동(종로, 노원, 은평, 서대문, 마포, 양천, 구로, 동작, 강동)
 - 복지 현장인력 확충 : 신규인력 513명 배치(동별 평균 2~3명 → 6~7명)
- 2단계 사업 확대 : 총 17개구 282개동
 - 1단계 13개구 + 4개구(동대문, 강서, 영등포, 관악)
 - '16.7.1 시행 대비 인력 확충, 실행계획 구체화 등 제반 여건 준비
- 찾아가는 복지 주요 사업 내용
 - 우리동네주무관(구역전담제) 통해 주민관계망 형성
 - 복지플래너 도입(65세 도래 어르신/출산가정/빈곤위기가정)
 - 복지상담전문관을 통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
 - 동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로 지역중심 복지지원체계 실현
- 중점 추진내용
 - 방문복지업무 실무매뉴얼 3종(복지·건강/마을/행정) 제작·배부('15.6)
 - 자치구 주무과장,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안착 협의·지원('15.7)
 - 市 추진단 동 현장방문하여, 추진현황 컨설팅을 통한 사업 안정화('15.8월~)
 - 주요 리더에 대한 집중 현장 교육 및 전직원 비전 공유
 - 동장·팀장대상 실전체험형 교육(8~9월) 및 현장실무자 사례중심교육(10~11월)
 -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자원관리시스템 및 복지플랜시스템 구축(11월초)
 - 현장 민·관 복지자원 공유 활용 및 상담·지원실적 관리 등

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강화

-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「긴급복지지원제도」
 - 최저생계비 185% 이하, 재산기준 가구별 135백만원(금융재산 500만원이하)
 - 지원실적 : 26,716가구 21,058백만원 지원('15.10월말)
- 복지공무원이 현장사정을 판단하여 先지원하는 「서울형 긴급복지사업」
 - 최저생계비 185%이하, 재산 18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,000만원 이하
 - ※ 갑작스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洞사례회의를 거쳐 지원
 - 지원실적 : 6,381건 921백만원 지원('15.10월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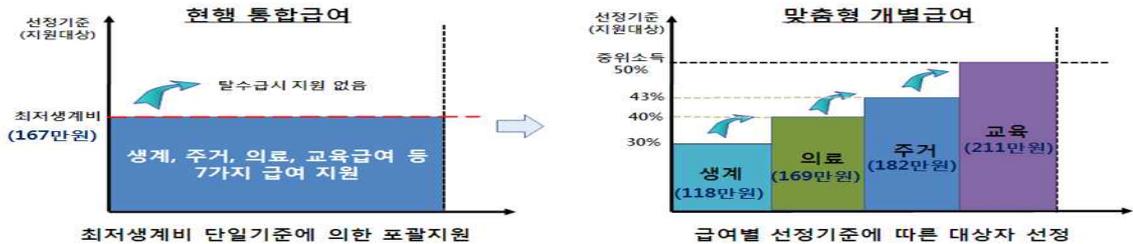
2

맞춤형급여 개편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개편 추진

● 맞춤형급여 개편 주요 내용 ('15. 7. 1. 시행)

- 통합급여(최저생계비 기준) ⇒ 맞춤형급여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급여별 기준)
- 선정기준 '최저생계비' ⇒ '기준 중위소득'으로 변경



-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

(예) 수급자 1인, 부양의무자 4인가구 기준 : 297만원 → 485만원

● 개편 추진에 따른 수급자 발굴 지원

① 수급자 현황 ('15.9월말 기준)

| 기초생계 | | 기초의료 | | 기초주거 | | 기초교육 |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가구 | 명 | 가구 | 명 | 가구 | 명 | 가구 | 명 |
| 140,118 | 198,294 | 150,327 | 219,767 | 148,436 | 217,811 | 21,047 | 29,959 |

② 신규 수급자 발굴 추진

- '15.9월말 기준으로 개편전 대비 2만명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로 추가 선정
-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,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 수급권자의 발굴을 통해 조속한 대상자 조사·선정 추진

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

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

- 소득 기준 : 최저생계비 →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
-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
 - 재산 : 가구당 1억원 이하 → 1억 3천 5백만원 이하 ※ (준용) '15년 긴급복지지원, 기초연금 기본재산액
 - 금융재산 : 가구당 1천만원 이하 → 2천만원 이하 ※ (준용) '15년 기초연금 금융재산 공제기준
- 부양의무자 기준 : 선지원 후심의 시행
 - 부양의무자 자료 및 정보 미제출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, 기피 등 확인 시 우선지원하고 보장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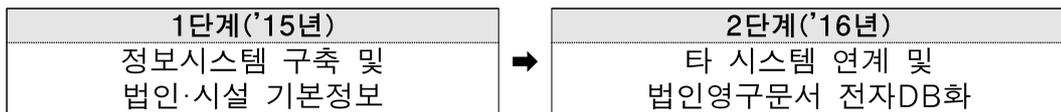
3 사회복지법인·시설 관리·운영 체계 개선

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

- **마을·주민 지향 복지시설로 변화를 선도할 평가지표 개발**(’15.11월 발표예정)
 - 우리시 복지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품질 제고 유인
 - 의회 소위원회 보고(4회)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표 개발
- **평가 대상 : 대형 이용시설 시범 실시**(’16년)
 - 종합사회복지관(98개), 노인종합복지관(32개소), 장애인종합복지관(45개소)
 - 매년 평가결과 보고회 개최, 평가결과 시설 환류 및 미흡시설 컨설팅 지원
 - 서울형 평가체계 안정화 단계(’16년 시범)를 거쳐 독자적 평가 기반 마련

법인·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

- **법인·시설 운영실태 종합관리시스템 개발**(’15.12월 완료예정)
 - 단순 시설현황 위주가 아닌 지도점검, 안전, 민원 등 부가정보 체계적 관리
 - 정보시스템 단계별 구축



- **점검 이력관리 등 DB화로 법인·시설 체계적인 관리 강화**
 - **법인·단체** : 허가 및 변경 정보, 이사회정보, 지도점검 관리 등
 - **복지시설** : 수입·지출 현황, 지도 점검, 평가, 시설 위·수탁 현황 등

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

- **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지원강화**
 - ’15년 종사자 인건비 평균 3.63% 인상 및 직급별 차등 반영(공무원 대비 95% 수준 유지)
 -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현황조사(5월) 및 ’16년 임금 인상률 및 기준(안) 마련중
- **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**
 - ’15년 운영비(98개소, 693억원) 및 기능보강비(74개소, 22억원) 지원
 - 복지관 기능강화를 위한 최소인력 및 명확한 예산 지원 기준 마련

2. 어르신이 더 행복한 도시 조성

① 활기찬 어르신을 위한 여가문화 조성

② 맞춤형 돌봄, 행복한 가족

③ 50+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 활성화

■ 베이비부머들이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■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

1

활기찬 어르신을 위한 여가문화 조성

종묘탑골공원 일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

● 어르신 맞춤형 문화거리 조성

- 추억의 거리 조성 : 추억의 사진전시(4월), 추억의 박물관(5월), 여성어르신 뷰티살롱(5월), 찻집지도 제작(10월), 어르신 명언 글판(연중) 등
- 문화공간 확보 :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(1,219㎡) 개관('15.3월)

● 추억이 있는 활기찬 어르신거리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

- 이동도서관, 심리의료상담, 스마트폰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(연중)
- 북콘서트, 음악동아리, 신나는 생활체조, 세대통합 장기대회, 시니어 자원봉사 등 주기적 행사 진행
- 탑골공원 일대 문화공연, 추억의 거리 행사 등 어르신 3,000여명이 참여하는 효자손 어르신 대축제 개최(10.25)

※ 실버영화관 100만 돌파 연계 기념행사(종묘탑골공원 나들이) 개최(5.19)

어르신 여가문화 서비스 수준향상

● 개방형 경로당 모델 개발 및 확산

- 기능적으로 지역과 소통하여 경로당 비회원 어르신 또는 일반 지역주민들도 함께 공유하는 **신개념 지역커뮤니티 공간 추구**(『개방형 경로당』 현판 부착)

※ 개방형 경로당 테마 유형별 실적(10월말 기준 128개소)

| 계 | 카페형 | 돌봄형 | 동아리형 | 학습(교육)형 | 도서관형 | 소득형 | 영화관람형 |
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|
| 128 | 33 | 2 | 18 | 15 | 10 | 6 | 44 |

● 어르신 돌봄인력을 독거어르신 신체활동리더(1,000명)로 양성(9.15부터 교육)

- 재가관리사(144명) 교육완료, 독거어르신생활관리사(856명) 교육 진행중

● 어르신 효자손 희망 대축제 개최(10.2~10.27)

-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 “어르신 서울 둘레길 걷기 대회” 개최 (10.2)
 - ▶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, 안산 자락길 걷기, 축하공연(서대문독립공원)
- 제8회 서울 노인 영화제 (10.21~23), 시니어 올림픽 대회 (10.22)
- 어르신 효자손 대축제(10.25), 어르신 으뜸왕 선발 대회 (10.27)

2

맞춤형 돌봄, 행복한 가족

치매·요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가족의 부담 경감

- 유닛케어 방식 등 신개념 공공노인요양원 3개 확충(131개소→134개소)
 - 신축(강동, 64인) 공사완료, 증축(영등포, 65인) 및 리모델링(은평, 72인)은 공사 진행중

〈 유닛케어 〉

- 거실을 생활단위 중심으로 하여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 가정에서 생활하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식



- 데이케어센터(주야간) 지속 확대 : 목표 '13년 228개소 → '18년 348개소(120개소 확충)

| 구 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10월말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목 표 | 228 | 248 | 268 |
| 실 적 | 210 | 253 | 272 |

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형 인증제 확대

- 노인요양시설 서울형 인증제 도입 : '15년 28개소(5%) → '20년 159개소(20%)

| 신청접수 | 인증 | 조건부 인증 | 부적정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55개소 | 35개소 | 8개소 | 12개소 |

-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확대 : '15년 80% → '20년 85%
 - '15. 10월말 기준 전체 272개소 중 219개소 인증 완료(목표대비 102%)

어르신 돌봄 종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

- 어르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

-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(구로) 추가 설치(구 영등포수도사업소 '16. 3월 개관 예정)
- 종사자권리수첩 제작, 소식지 발간, 실태조사 실시, 돌봄종사자 한마당 축제(10.3)

-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도입

- 어르신돌봄 가족(1,000명) 대상 3일 이내 힐링 프로그램 휴가비 지원
 - ※ '15. 10월 기준 총 555명(138백만원) 지원 완료 및 3차 접수 진행중
- 대체돌봄 거점 단기보호기관(93개소) 연계하여 어르신 돌봄 지원 : 3일 이내

3

중장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활성화

50+정책 실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및 시설 확충

● 50+재단 설립 추진

❖ 기획·연구 + 사업집행(캠퍼스 운영) + 관계망 구축

- '재단 및 캠퍼스 추진단' 운영('15.11~'16.1), 재단 창립총회 개최('15.11월초)

● 50+캠퍼스 확충

❖ 50+세대의 일과 여가, 교육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플랫폼

- 은평('16.3 준공) : 서울이모작센터 ⇒ 50+캠퍼스로 확대전환('15.10월말 착공)
- 마포('16.9 준공) : 공사발주 중, 12월 착공예정
- 구로('17.5 준공) : 공사발주 중, 12월 착공예정

● 구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충 : 개소별 시설비(15억), 운영비(3.5억) 지원

- 동작('15.12 개관), 영등포('15.12 준공), 노원('16.4 준공)
- 50+캠퍼스와의 통합적 홍보를 위해 '50+센터'로 명칭 변경

중장년층 및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지원

● 50+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

- 50+세대 보람일자리 지원 : 442명(경로당코디네이터, 도시텃밭활동가 등)
- 50+세대 사회공헌형 일자리(고용노동부) 지원 : 652명('14년 234명)
- '중장년층 인생이모작 한마당', '보람일자리 시민공모전' 추진('15.11.10)

●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지원 확대

-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지원 : 44,402명('14년 39,995명)
- 시니어택배, 자원관리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새로운 일자리 발굴 추진

● 인생이모작지원센터(서울, 도심권)를 통한 인생재설계 지원

- 사회공헌아카데미 등 교육 5,241명, 일자리 상담 및 연결 6,924명, 구인처개발 976명,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, 온·오프라인 커뮤니티활동 등 사회참여 3,968명
- 찾아가는 양방향 소통행사 확대 : 은퇴설계콘서트(13회 1,049명), 50+소통마당(2회 72명)

3. 함께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자립 도시 실현

① 장애인 대상 특화서비스 지원

② 무장애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

③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증진

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가족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

■ 무장애 환경조성,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사회 참여 환경 개선

1 장애인 대상 특화서비스 지원

장애인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

● 중증 장애인 연금지급 확대

- 지원대상 :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(1~2급, 3급 중복장애)
- 선정기준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지원 : 76,587백만원 월평균 47,620명

| 구 분 | '14년 | '15년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가구별 선정기준액 | 단독87만원, 부부 139만원 | 단독93만원, 부부 149만원 |
|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| 1월 ~ 6월 99,100원 7월~12월 200,000원 | 200,000원 |

● 장애수당 지급 : 29,600백만원 월평균 80,190명

- 18세이상 3~6급 장애인중 차상위계층 이하(3만원 → 4만원/월 인상지원)
- 18세미만 1~6급 장애인중 차상위계층 이하(2만원 ~ 20만원까지/월)

자립생활공동체 조성 지원으로 탈시설화 가속 추진

●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생활시설 지속 확충

- 전세주택 보증금(75백만원) 6명, 개인 독립생활가정 정착금(12백만원) 14명 지원
- 공동생활가정3개소, 자립생활주택 2개소 확충

● 전환서비스 지원, 맞춤형 장애인 자립 가이드 제공

- 자원연계·운영, 이용상담, 대외협력 등 맞춤지원 334건
- 조사연구, 워크숍, 교육, 자문 등 그룹홈 역량강화 18회

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으로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

● 성인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생활능력 시설 개소(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)

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(1층) : 땅콩나물 재배(20명)
- 자립지원프로그램(2층) : 직업훈련, 요리, 음악치료, 방과후 프로그램 등(10명)
- 단기거주시설(3층) : 장애인부모 긴급사유 발생시 1회 3~5일 이내 보호(15명)

●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센터 조성 기반 마련

- 자치구 공모 2개구 선정,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
- ※ 발달 장애인 당사자·부모·시민단체 등 자문위원회 구성, 설치운영방안 상시 자문(5회)

2

무장애 환경확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

장애 없는(Barrier Free) 환경 확대

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

-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: 6,425개소(점자블록, 노유자시설, 의료기관 등)
- 건축허가, 사용승인 등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확인 : 10,682개소

●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지원 : 110가구

- 정상인에 맞추어진 주택구조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구조로 수리
-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경사로 및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

● 시각장애인 생활·이동지원센터(舊 장애인심부름센터) 운영 강화

- 이동환경개선을 위한 콜 관제시스템 재구축 및 카드단말기 도입, 차량 증차(5대)

장애인 복지관 확충 및 장애인가족 돌봄부담줄이기

●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: 27개소 → 31개소

-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자치구에 신속으로 장애인종합재활서비스 제공
- 동대문('16.3월 준공), 관악('17.1월 준공), 도봉('17.5월 준공), 은평('18.6월 준공)
※ 장애인복지관 : 45개소 → 49개소(종합 31, 지적 5, 시각 5, 지체 3, 청각 3, 뇌병변 2)

●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

- 임신·출산·육아 양육지원을 위해 월 최대 120시간 홈헬퍼 지원
※ 운영실적('15.10월) : 여성장애인 145명 가정에 홈헬퍼 19,575회 지원(월평균 15회)
- 수행기관 : 성프란치스코복지관 외 14개 복지관

●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추진 : 920명 목표

- 중증장애인, 한부모 가정 우선 선정 지원
- 1박 2일, 2박 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
- 여행기간 중 돌봄서비스 병행 지원 : 단기보호(3일) 및 비용(15만원) 지원
※ 운영실적('15.10월) : 40개 장애인복지관 1,275명 돌봄가족 휴가 지원

1.

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·어르신을 위한 이불빨래방 운영

- 장애인복지관,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한 이불빨래 세탁 지원
- 상시 세탁차량 운용이 가능하도록 세탁차량 1대 구매('15.5월)
※ 운영실적('15.10월) : 1,850명 5,150채 이불빨래 세탁지원

3

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증진

장애인 인권센터 사법적 권리구제 기능 강화

- 시설 장애인+지역사회 장애인으로 서비스대상 확대
 - 상담~사법적 지원까지 ONE-STOP 지원 체계 구축
 - ※ 동작구 노예사건 소송지원(판결결과 母 징역 2년, 子 징역 3년)
- 장애인인권 취약계층 대상 '찾아가는 법률상담' 서비스 제공
 - 임대주택(상일동, 하계동, 가양동) 및 저소득층 밀집거주지역 장애인 대상
 - 인권센터 법률 자문단 및 외부 변호사(5명) 등과 연계, 사법지원 서비스 제공(51건)
- 장애인 인권증진 활동 운영('15. 10. 20 기준)
 - 사건접수 : 554건(완료 509건, 진행중 45건)
 - 완 료 : 법률지원 328건, 사후조치 13건, 조사중 해결 등 168건
 - 인권교육 : 7,890명(당사자 1,191명, 종사자 1,430명, 공무원 등 1,403명, 학생 등 3,866명)

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프로세스 전면개편 추진

- 센터 중심의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로 전문성 강화
 - 인권침해 조사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으로 실질적 실태조사
 - 거주시설 위주에서 단기·그룹홈까지 확대 시행
- 경찰,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로 효과적인 조사체계 구축
 - 실태·침해사례 현장조사에 유관기관 직원 동행 등 업무공조
 - ※ 송전원 압수수색 및 피해자 분리조치 사례(서울시, 경찰, 도봉구)
-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 외부통제기능 강화
 - 거주시설내 인권지킴이단 내·외부단원 전면 재구성에 따른 활동 강화
 - 외부단원(공공후견인, 변호사, 인권전문가 등)을 과반수 이상 구성(558명)
 - 시설내 무연고 공공후견인 지정 의무화로 인권침해 예방 및 상시 욕구조사

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홍보 및 제도개선

-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수립 마련을 위한 전문가 등 집단지성 강화
 - 토론회,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토대 마련
-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
 - 인권침해 시설장 등 이력관리제로 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시스템 구축

4. 노숙인·쪽방주민 복지서비스 확대

① 노숙인 보호 및 자활·자립 지원

② 쪽방촌 주민 복지지원 확대

■ 노숙인 보호와 일자리 제공 및 인식개선 사업으로 자립기회 제공

■ 쪽방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지원

1 노숙인 보호 및 자립 지원

노숙인 보호 및 의료지원

- **민·관·경 거버넌스를 통한 거리노숙인 보호**(’15.7.31. 협약체결)
 - 노숙인 밀집지역 전담경찰관 배치(5명) 및 지역별 담당경찰관 지정(290명)
 - 시·경찰 노숙인 케어팀 구성 : 순찰강화, 신원확인, 정신질환 노숙인 응급입원 등
- **종합지원센터(다시서기, 브릿지) 운영**
 - 거리상담 5,622건, 위기대응콜 3,173건, 정신건강팀 3,666건 처리
 - 1일 잠자리 이용인원 : 330명(다시서기 266명, 브릿지 64명)
- **노숙인 및 쪽방주민 의료지원**
 - 서울의료원 등 11개 지정병원 : 29,569명 진료
 - 무료진료소(서울역, 영등포) : 22,880명 진료 및 상담
 - 결핵검진 : 2,565명(상·하반기), 독감예방접종 : 3,800명(’15.10.14~11.12)

일자리·주거지원 연계 자립 지원

- **개인별 근로능력에 맞는 공공·민간 일자리 지속 확충**
 - 공공일자리 : 883명(특별자활 481, 공공근로 등 402)
 - 민간일자리 : 824명(일용직 299, 경비·운전 124, 청소 101, 제조 72 등)
 - 노숙인 가관대 지원 : 19개소 운영 중
- **공동작업장 운영 확대**
 - 9개소 365명(’15.9월) → 12개소 400명(’15.12월)
 - 타공기, 밴딩기 등 장비구입비 지원(1개소 12백만원)을 통한 수입증대
- **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**
 - 공동생활가정 : 90가구(269명), 매입임대 : 782가구(1,162명)
 - 사례관리사 배치(7명) : 임대료 체납관리, 알코올 중독상담 등

2

쪽방촌 주민 생활편의·복지지원 강화

쪽방촌 주민 생활안정 지원

● 수급자 발굴 등 기초생활지원

- 수급자 지정(22명), 주민등록복원(18명), 취업알선(57명) 등/ 무료검진 등 9,904건
- 민간후원 생필품 등 기초생활지원 106,261건(1,056백만원 상당)

● 지역별 주민 특화 프로그램 지원

- 프로그램 운영 : 등산, 음악, 컴퓨터, 생활체육, 자유펙방, 식생활 개선 등
- 자활작업장 : 양말인형·방향제 제작 공방, 꽃피우다, 밀반찬 가게 운영

●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(15.10.13 협약)

- 참여호텔 : 11개사(앰배서더, 롯데, 인터컨티넨탈, 조선 등)
- 후원물품 : 32종 이상(위생용품, 가전제품, 침구 등)
- 지원대상 : 쪽방 주민, 노숙인 시설, 그 외 복지시설



쪽방촌 생활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

● 돈의동 쪽방촌 생활여건 개선 사업(국가지역발전위원회 선정 사업)

- 사업규모('15~'18년): 5,212백만원(국비 3,606, 시비 586, 구비 1,020)
- 커뮤니티센터 설치, 장관·도배 등 집수리, 경관개선, 공동작업장 등

●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 추진('16~'17년)

- 기존 쪽방 건물을 임차하여 저가로 임대하여 주거안정 지원
- 사업규모 : 200호('16년 100호, '17년 100호)

※ '15년 조기 추진 : 동자동 쪽방 52실(11월초 입주), 창신동 쪽방 21실(11월말 입주)

안전한 주거환경 조성

● 전기·가스·소방시설물 안전점검

- 상반기(4월~5월) : 전기(471개소)·가스(146개소)·소방시설물 전수 점검
- 하반기(11월 중) : 소방본부 합동 겨울철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

● 쪽방촌 주민 특별보호대책 추진

- 여름철(6~8월) : 쉼터 8개소 운영, 특별보호대상자 118명 중점관리
- 겨울철(11~3월) : 응급구호방 개설, 방문간호사운영, 야간순찰 강화 등

2015년 주요업무보고

2015. 11. 19.

복지정책과



1.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활성화 지원

사업개요

- 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,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
※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」 제정 및 위원회 구성 : 1993.5월
- 제11대 사회복지위원회 현황
 - 위원 수 : 총16명 【민간위촉직 14, 당연직 2】
 - 회의운영 : 정기회 1회, 임시회(필요시), 외부이사추천 소위 분기별 1회

추진실적

- 사회복지위원회 정기회 개최 : '15. 8. 19
 - 시정계획 및 공양사항, 주요 현안사업 보고, 2015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심의
-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 소위원회 개최 : 3회(3.20, 4.22, 8.19)
- 사회복지위원회 임시회 개최 : '15. 11. 5
 - 2016년 예산(안),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주요 현안사업 보고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13,600 | 6,850 | 50.4 | |

향후계획

-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 소위원회 개최 : '15. 11월말(예정)

작성자 복지정책과장 : 엄의식 (☎2133-7310) 복지정책팀장 : 조영창 (☎2133-7312) 담당 : 엄삼용 (☎2133-7316)

2. 서울시 복지상 시상

□ 추진배경

-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시민 및 단체를 발굴·표창하여 나눔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

□ 사업개요

- **근 거** :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제2조
- **분야 및 인원** : 2개 분야 16명
 - 복지자원봉사·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 : 대상 1, 최우수상 3, 우수상 6
 - 장애인인권 분야 : 대상 1, 최우수상 2, 우수상 3

□ 추진실적

- '15년 장애인인권분야 수상자 선정 : '15. 4월

| 구분 | 당사자(4) | 지원자분야(2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 상 | 윤 두 선 (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) | |
| 최 우수 상 | 전 인 옥 (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) |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|
| 우 수 상 | 윤 정 열 (청소년축구교실 운영) | 조 준 호 (동작구 수화통역센터장) |
| | 백 승 완 (가나안근로복지관 관장) | |

- '15년 복지자원봉사·후원자 및 종사자 수상자 선정 : '15. 8월

| 분 야 | 복지 자원봉사자 | 복지 후원자 | 복지 종사자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 상 | 성태숙 (구로파랑새나눔터공부방지역아동센터) | | |
| 최 우수 상 | 은빛봉사단 | 슈나이더일렉트릭 | 김 은 아 (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) |
| 우 수 상 | 이 은 창 | 소시에테제너럴 | 채 준 배 (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) |
| | 도 원 수 | 노 명 근 | 윤 선 희 (사회복지법인 성민) |

- '15 사회복지대회 시상식 개최 : '15. 9. 9(수)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(☎2133-7310) | 복지행정팀장 조영창 (☎2133-7312) | 담당 김정열 (☎2133-7319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
3. 주민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- 찾아가는 복지 실현

추진배경

- 기존洞주민센터의 기능을 주민과 마을 중심의 복지체계로 재편하고 복지인력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(가칭)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(시장방침 제244호, '14.9.14)
- 사업내용
 - 복지플래너 도입을 통해 '찾아가는 복지'로 전환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
 - 복지상담전문관을 통해 복지·보건·고용 등 통합정보 및 원스톱서비스 제공
 - 동단위 사례관리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관리
 - 주민의 역량 강화와 촘촘한 관계망 형성을 통한 복지생태계 조성
- 총사업비 : 10,534백만원

추진경과

- 1단계 사업 자치구 공모·선정('14.12)
 - 전동 시행(4개구 61개동): 성동, 성북, 도봉, 금천
 - 일부동 시행(9개구 19개동): 종로, 노원, 은평, 서대문, 마포, 양천, 구로, 동작, 강동
- 예비동 운영('15.3.2~6.30)
 - 4개동 시행(성동 마장동, 성북 월곡2동, 도봉 방학2동, 금천 독산3동)
- 1단계 찾아가는 복지 본격 시행('15.7.1): 13개구 80개동
 - 자치구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, 매뉴얼 제작·배부, 상징아이템 제작·배포
- 2단계 찾아가는 복지 사업 추진 준비
 - 공모('15.8.19~9.7) · 13개구 선정(9.15) · 시행('16.7.1)

작성자

복지정책과장: 엄의식 (☎2133-7310) 동복지 기획팀장: 강재신 (☎2133-7346) 담당: 강소라 (☎2133-7341)
동복지 지원팀장: 문미정 (☎2133-7342) 담당: 최문선 (☎2133-7351)

추진실적

○ 복지플래너 등 신규인력 채용 : 동별 평균 6.41명 추가배치

- 총원규모: 513명(사회복지 인력 407명, 방문간호사 106명)

| 계 | 공개경쟁(9급) | 민간경력경쟁채용 | 일반임기제 | 방문간호사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513 | 175 | 189 | 43 | 106 |

- 복지플래너 : 우리동네주무관과 방문간호사 동행방문, 보건과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

○ 사업실행 매뉴얼 제작·배부('15.6)

○ 복지플래너 발대식('15.7.22) : 신규공무원 등 623명 참석

○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장인력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

- '찾아가는 동주민센터' 사업 이해도 향상교육('15.5~7)

· 공무원(기존/신규)과 시민(통반장, 민간복지기관 종사자)대상 19,506명 교육실시

- '찾아가는 동주민센터' 핵심인력 현장교육 ('15.9~11)

· 동장·팀장대상으로 토론중심의 교육,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교육

○ 1단계 사업 1차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한 사업 안정화('15.8~9)

- 80개동 현장방문. 고충사항 청취 및 우수사례 발굴·공유

○ 사업효율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기반 구축('15.6~10)

- 동단위 민·관 자원개발 및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(11월초 오픈)

- 상담 및 사례관리 운영 지원 위한 복지플랜 시스템 구축(11월초 오픈)

< 예산현황 >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률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0,534,475 | 8,451,908 | 80.2 | *인건비(국·시비 매칭) 포함 |

향후계획

○ 1단계 사업 성과 진단 위한 지표개발 및 성과진단 계획 수립 : '15.11

○洞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(25개구 424개동 전수조사) : '15.10~12

4.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

추진배경

- 자치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건비와 자치구·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지무요원 중식비 지원

사업개요

- **근 거**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, 제43조,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, 제29조
 - 병역법 제31조 제5항, 사회복지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44조
- **대 상** :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,953명, 사회복지무요원 2,608명
 - 전담공무원 : 기존 2,175명, 복지부 순증 546명, 서울시 순증 232명
 - 사회복지무요원 : 시설 1,961명, 자치구 및 주민센터 647명
- **지원내용** :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, 사회복지무요원 중식비 지원

| 지원내역 | 분담비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| - 기 존 : 시비 50%, 구비 50% - 복지부 순증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 - 서울시 순증 : 시비 75%, 구비 25% |
| 사회복지무요원 중식비 (전담공무원 업무보조, 사회복지시설근무) | - 전 담 공 무 원 : 시비 50%, 구비 50% - 사회복지시설(시립) : 시비 100% - 사회복지시설(구립) : 시비 50%, 구비 50% |

추진실적
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: 2,953명, 36,813,927천원
- 사회복지무요원 중식비 지원 : 2,608명, 1,677,817천원

〈 예산현황 〉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57,706,985 | 38,491,744 | 66.7 | |

향후계획
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및 사회복지무요원 중식비 매월 지원

작성자 |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(☎2133-7310) 동복지 기획팀장 강재신 (☎2133-7346) 담당 이예빈 (☎2133-7317)

5.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중심적 역할 수행 추진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
- 시설현황 : 98개소

| 운영보조금 | | 소유주체 | | | | | 운영주체 | | | | 규모 | |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지원 | 특별지원 | 시립 | 구립 | SH | LH | 법인 | 사복법인 | 재단법인 | 학교법인 | 사단법인 | 2,000㎡ 초과 | 1,000㎡~2,000㎡ | 1,000㎡ 미만 |
| 94 | 4 | 1 | 51 | 15 | 14 | 17 | 76 | 10 | 11 | 1 | 40 | 52 | 6 |

※ 재원부담 : 시비 90%, 구비 10%(단, 시립·영구임대단지내 복지관은 전액 시비)

추진실적

- '15년 운영 보조금 차등지원 범주설정 : '15. 2~4월

| 범주별 | 「갑」형(19%) | 「을」형(30%) | 「병」형(30%) | 「정」형(21%)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시설수(94개소) | 18개소 | 28개소 | 28개소 | 20개소 |
| 지원금액(천원) | 689,389 | 672,872 | 653,936 | 634,067 |

- '15년 운영보조금 분기별 교부 : 분기별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률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69,268,575 | 67,306,681 | 97.1% | 4/4분기까지 교부 |

- 기본운영비 : 58,020,255천원(인건비·운영비 구분 없이 포괄예산으로 지원)
 ※ 지원방법 : 사업수행능력, 실적·규모 등을 고려 기본운영비 차등지원
- 기타 지원비 : 11,248,320천원(종사자수당, 이동목욕사업비, 기능특화비 등)

향후계획

- 운영비 교부액 정산 : '15.12월

| | |
|-----|---|
| 작성자 | 복지정책과장 : 엄의식 (☎2133-7310) 시설지원팀장 : 오은미 (☎2133-7336) 담당 : 윤일규 (☎2133-7337) |
|-----|---|

6.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관 시설 개·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

사업개요

- 근 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(시설의 안전점검 등)
- 대 상 : 종합사회복지관 94개소(운영비 지원 정수의 시설 4개소 제외)
- 사업내용 : 시설 증축, 개·보수 및 장비보강
- 추진방법 : 사업 선정 타당성 검토 실시(서면 및 현장조사 병행)

추진실적

- 1차 사업비 교부 : '15. 2월
-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(서울시복지재단) : '15. 2. 16
- 기능보강 사업설명회 : '15. 3. 20
- 2차 사업비 교부 : '15. 8. 28
- 3차 사업비 추가 신청분 교부 : '15.10. 22

※ 10월 말 현재 77개소 176개 사업 지원

< 예산현황 >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률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2,219,636 | 2,120,062 | 95.5% | |

향후계획

- 긴급 기능보강 지원 및 정산 : '15.11월~12월

작성자 복지정책과장 : 엄의식 (☎2133-7310) 시설지원팀장 : 오은미 (☎2133-7355) 담당 : 이광훈 (☎2133-7355)

7.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

추진배경

- 서울시 사회복지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, 사회복지 시설간 협의·조정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

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 및 제42조
- 법인명 : 사회복지법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」(’99.1월 설립)
- 임원 : 총27명[이사25명 (회장 황용규, 72세), 감사2명] ※ 고문3명

추진실적

- 사회복지신년인사회 : ’15.1.16.
- 시장, 시의원, 사회복지법인·시설대표 등 사회복지인 300여명 참석
-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 등 전문교육 실시 : ’15.1~12월
- 총30회, 1,525명 참여[기본 15회/583명, 방문·연계 6회/543명, 전문 9회/399명]
- 서울사회복지 걷기대회 : ’15.4.17.
- 복지시설이용자·종사자, 후원자, 시민 등 5천여명 참여로 사회복지인 화합 도모
- 서울사회복지포럼 : ’15.7.14.
- 시설 기관장·실무자, 시의원, 교수 등 200여명, ‘서울복지거버넌스 발전방안’ 논의
- 서울사회복지대회 : ’15.9.9.
- 사회복지인 800여명 참여,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사회복지인 격려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’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855,799 | 855,799 | 100% | 분기별 집행 |

향후계획

- 2015 서울복지국제포럼 : ’15.12.2.

작성자 |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(☎2133-7310) | 시설지원팀장 : 오은미 (☎2133-7336) | 담당 : 남혜진 (☎2133-7338)

8.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'08년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*로 서울시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보수교육비 지원 건의 *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

사업개요

- 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5조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
- 사업내용 :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
 - 지원기준 : 보수교육단가(48천원/인, 8시간/일)의 50% 지원
 - 지원방법 :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기관(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) 통해 지원
 - 교육대상 :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8,000여 명

추진실적

- 보수교육비 교부
 - 1차 76,800천원 (3월) / 2차 57,600천원 (6월) / 3차 57,600천원 (9월)
- '15. 9.30. 현재 112회 실시 4,764명 이수(예정 : 165회, 8천명)
 - ※ 하반기에 교육 인원 집중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률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192,000 | 192,000 | 100% | |

향후계획

- 보수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: '15.10 ~ 12월

작성자 복지정책과장 : 엄의식 (☎2133-7310) 시설지원팀장 : 오은미 (☎2133-7336) 담당 : 이광훈 (☎2133-7355)

9. 법인·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

추진배경 및 목적

- 법인·시설 현황 및 이력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종합적인 복지정책 분석과 정책수립에 활용

사업개요

- 근거 : 법인·시설관리시스템 구축계획(복지정책과-3261, '15.2.9)
- 사업기간 : '15. 2 ~ '16. 12
 - 1단계('15년) : 정보시스템 구축 및 법인·시설 기본정보 구축
 - 2단계('16년) : 타 시스템 연계 및 법인영구문서 전자DB 구축
- 사업대상
 - 법인 : 1,042개(법인 313개, 사단 296, 재단 13, 민간단체 420개)
 - 시설 : 6,601개소(여성 651개, 경로당 3,339개소 포함)

추진실적

- 시스템 발주준비 및 계약 : '15.2.~5월
- 계약업체 : (주)에니아소프트 컨소시엄(계약금액 : 246백만원)
- 사업추진 : '15.5.6 ~ 12.1(10월말 기준 : 89.2%진척)
 -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구성 연계관련 협의 및 시스템 분석
 - 법인 및 시설담당자 업무 협의 및 자료 분석
 - 정보시스템 구축 및 법인·시설 기본정보 DB 구축 등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296,673 | 125,938 (선급금 84,000, 재배정 : 41,938) | 42.4% | · 41,938 (H/W도입비)데이터센터 재배정 · 78,000 증액(과업추가 사업변경) |

향후계획

- 1단계 시스템 구축완료 : '15.12월
-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 연계 : '16년

작성자 | 복지정책과장 : 엄의식 (☎2133-7310) | 복지협력팀장 : 한재훈 (☎7333) | 담당 : 김광숙 (☎7324)

10.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중앙평가의 양적평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질적평가 지표 개발과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최소화·사후관리 등 합리적 평가결과 활용

추진실적

-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(안) (시장업무보고) : '15.1.28.
- 복지관협회 등 직능협회 및 관련부서 간담회 등 업무협의 총15회
-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현황 조사 : '15. 2.25 ~ 3.20.
- 서울복지거버넌스 지역사회분과 자문위원회 의견수렴(6회) : '15. 3~
- 시설 종류별 지도점검 현황 및 점검항목 분석 : '15. 3.~
- 시의회 평가체계 개선 소위원회 업무보고(4회) : '15. 3.~
- 예비모임(4.9), 1차(4.22), 2차(4.29), 3차(9.11)
-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아이디어워크숍 : '15.6.4.
- 평가체계개선 소위원회 시의원, 복지시설 관계자 등 30명 참석(市복지재단)
- 평가지표(안) 적용 모의평가 모니터링 : '15.7.28 ~ 31.
- 평가대상 : 총 6개 기관(노인·장애인·사회복지관 각 2개소)
-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(안) 정책설명회 개최 : '15 .10.13.

향후계획

-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 및 체계 발표 : '15.11월
- 3종복지관 서울형 평가 매뉴얼 작성 및 시범실시 : '16.1월~

| | |
|-----|---|
| 작성자 | 복지정책과장 : 엄의식 (☎2133-7310) 시설평가팀장 : 구연창 (☎2133-7346) 담당 : 이경복 (☎2133-7334) |
|-----|---|

11.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·집행함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
-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,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

□ 사업개요

- 근거 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
- 사업대상 :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~120% 이하 가구
- 사업내용 :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별·계층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·제공

| 계 | 아동역량개발 | 노인·장애인 사회참여지원 | 노인·장애인신체건강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30개 | 11개 | 4개 | 15개 |

- 이용방법 :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대상자 명의로 발급·사용
- 지원액 : 월 3~21만원(사업, 등급별 차등)
 ※ 본인부담금 10~30%(월 6천원~8만원, 대상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)



□ 추진실적

-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,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등 37,900명 대상
-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: '15.7월~8월
 - 서비스만족도 관련 전화조사 방법으로 2,662명 모니터링 실시
- 하반기 서비스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: '15.8~9월

〈 예산현황 〉 - 국비 50%, 시비 50%(구개발형사업 : 국50,시25,구25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13,214,582 | 9,400,263 | 71.1 | |

□ 향후계획

-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: '15. 10월~11월말
-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 : '15. 11월 말

작성자 | 복지정책과장: 엄의식 (☎2133-7310) | 시설평가팀장: 구연창 (☎2133-7346) | 담당: 김경록 (☎2133-7329)

12.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

추진배경

-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위문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·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
- 사업대상 : 서울시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20,934명, 10개 보훈단체
- 사업내용
 - 기념일(3.1절, 광복절 등) 위문금 지급, 서울시참전명예수당 지급(월/5만원)
 - 보훈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(10개단체)
 - 보훈의 집 운영, 보훈가족 행복콘서트 초청 등

추진실적

- 참전명예수당(25,804백만원) 및 기념일 위문금(956백만원) 지급
-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(575백만원) : 3.1절 민족정기선양대회 등 활동지원
- 보훈의 집 운영 : 90명, 263일 이용
- 보훈가족 행복콘서트 참석 : 2회 120명 관람(5월)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33,506,000 | 28,406,990 | 82.8 | |

향후계획

- 참전명예수당 및 애국지사 보훈명예 수당 지급 : '15.11~12월
- 보훈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: '15.11~12월

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(☎2133-7310) 복지협력팀장 한재훈(☎2133-7333) 담당 고성남(☎2133-7343)

13. 재해구호체계 구축

추진배경

- 태풍·홍수·호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재해구호법,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- 사업대상: 이재민과 일시대피자(외국인 포함)
- 사업내용
 -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, 침수주택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
 - 재해구호물자의 구매 및 보관창고의 운영
 -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'무더위쉼터' 냉방비 지원

추진실적

- 재해구호물자창고 정비 실시 : 14,000천원
 - 메쉬웬스 설치, 지반정비 및 골재포설, 불법주정차경고판 설치
- 재해구호물자 구매 : 26,480천원(취사구호세트 400개)
-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: 299,400천원

〈예산현황〉 - 시비 100%(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152,845,853 | 113,584,704 | 74.3 | |

※ 고유목적사업비(809,360천원), 예약금 및 예치금 (152,036,493천원)

향후계획

-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분야 전문교육 실시 : '15.11월

작성자 복지정책과장 : 엄의식 (☎2133-7310) 복지협력팀장 한재훈(☎2133-7333) 담당 고성남(☎2133-7343)

2015년 주요업무보고

2015. 11. 19

희 망 복 지 지 원 과

1.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

추진배경

- 학자금 대출, 주거비,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폭세대 (연애·결혼·출산·인간관계·내집마련 포기)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 지원

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교육비, 주거비, 결혼자금, 창업·운영자금 적립목적으로 저축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
 - 본인: 소득200만원이하, 부모: 최저생계비 200%이하
- 목 적 : 청년층(만 18세 ~ 34세)의 교육비, 주거비, 결혼자금,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
- 사업내용
 - 지원금액 및 기간 : 5·10·15만원 / 2년, 3년
 - 지원방법 : 본인 저축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(1:0.5)
 - 매칭지원액 재원 : 시예산 60%, 민간재원 40%

추진실적

- 선 발 : 2015. 4 30~8. 3(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)
- 선발결과 : 600명 선발
- 약 정 식 : 2015. 8. 19(수) 19:00~21:30

〈 예산현황 〉 - 출연금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370,000 | 370,000 | 100 | |

향후계획

- 희망두배 청년통장 2차 모집(400명) : '15.11~12월

2. 나눔이웃 · 디딤돌 사업

추진배경

- 자발적 시민봉사자인 ‘나눔이웃’ 육성, 자조적인 돌봄·나눔체계 구축
- 민간부분의 복지자원 발굴, 저소득층 연계 지원

사업개요

- 나눔이웃 현황 : 총 5,421명('15.7월 현재)

(단위 : 명)

| 계 | 지역나눔이웃 | 직장나눔이웃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
| | | 소계 | 한전검침원 | 중개사 |
| 5,421 | 4,491 | 930 | 882 | 48 |

내 용

- 저소득 독거어르신 도시락(반찬)나눔, 송편나눔, 김장나눔, 거동불편자 안부문기 등
- 돌봄지원 재원마련 바자회, 지역의 민간 후원업체 발굴 및 지속적 관리

추진실적

- 나눔이웃 2,196명, 돌봄이웃 발굴 1,379명, 서비스 지원 6,274명, 지역활동기금마련 25,880천원(누계실적 183,807천원)
- 디딤돌 협력업체 449개소, 기부업체 16,030개소

< 사업비현황 >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구 분 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나눔이웃 | 443,500 | 409,000 | 92.2% | 재단출연금 143,500천원 희망온돌기금 300,000천원 |
| 디딤돌 | 74,000 | 57,000 | 77.0% | 재단출연금 100% |

'15 추진계획

- 나눔이웃 활동지원 : 1~12월
- 나눔이웃 교육, 위촉장 수여, 배지 및 활동수첩 등 지원
- 나눔이웃 네트워크협의체 구성·운영 : 6~12월(분기별)
- 사업평가 및 성과 보고회 : 11~12월

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작성자 | 희망복지지원과장: 안찬율(☎2133-7370) | 희망복지기획팀장: 김건태 (☎2133-7372) 담당: 최세영 (☎2133-7373) |
| | | 긴급복지지원팀장: 김건태 (☎2133-7372) 담당: 최기홍 (☎2133-7380) |

3. 위기가정 긴급지원 체계 구축

□ 추진배경

-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, 빈곤층으로의 유입 방지
-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대상 서울형긴급복지 도입 시행

□ 사업개요

① 긴급복지 : 긴급복지지원법

- 대 상 : 사망, 중병 등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
 - 소득기준 : 최저생계비 185% 이하 가구

| 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원/월 | 1,141,970 | 1,944,439 | 2,515,423 | 3,086,409 | 3,657,395 | 4,228,379 |

- 재산기준 : 가구별 135백만원 이하(금융재산 500만원 이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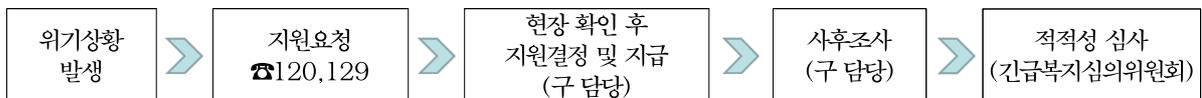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 :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

-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연료비·장제비 등

(단위 : 원)

| 지원종류(인/월)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생계지원(최대 6개월) | 409,000 | 696,500 | 901,100 | 1,105,600 | 1,310,200 | 1,514,700 |
| 의료지원(최대 2회) | 3,000,000 | | | | | |
| 교육비지원(최대2분기) | 초등학생(209,400), 중학생(333,300) 고등학생(408,400원, 수업료+입학금) | | | | | |
| 주거지원(최대12개월) | 365,800 | | 607,800 | | 801,700 | |
| 복지시설 이용(최대6개월) | 506,300 | 863,700 | 1,117,500 | 1,370,200 | 1,624,000 | 1,877,800 |
| 기타(연료비 6개월,그외 1개월) | 연료비 90,800원, 해산비 60만원, 장제비 75만원,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| | | | | |

○ 처리절차



② 서울형긴급복지 : 서울시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

- 대 상 :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
 - 지원기준 : 최저생계비 185%이하, 재산 18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
 - 지원금액 : 1인가구 30만원, 2인가구 50만원 이내
 - 담당자 선지원 제도 도입(20만원 이내) 추후 동 사례회의 개최하여 사후 승인
 - 소득·재산 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,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
- ※ 현물 또는 현금지원 가능

③ **위기긴급기금지원 :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**

- 사업기간 : '15.4.1~'16.3.31
- 사업대상 : 최저생계비 200%이하 가구
- 지원내용
 - 지역위기긴급기금 : 5개 항목 지원, 1가구당 30만원 이하 지원
 - ▶ 냉난방비,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, 기타 긴급비(최대3개월, 동절기 4개월)
 - 광역위기긴급기금 : '지역위기긴급기금' 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 위기가정
최고 500만원 내, 의료비 또는 임시주거비 등 지원

④ **주거위기가정지원**

- 대 상 :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, 여관·찜질방 등에서 미성년자녀와 살고 있는 최저 생계비 200% 이하 가구
- 지원내용 : 임차보증금 최대 5백만원(대한주택보증(주) 이사지원(두꺼비이사))

추진실적

- 지원실적 (단위:명/ 백만원)

| 구 분 | 계 | | 생계비 | | 의료비 | | 주거비 | | 교육비 | | 기타 지원 |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|-------|-----|
| | 가구 | 금액 | 가구 | 금액 | 가구 | 금액 | 가구 | 금액 | 가구 | 금액 | 가구 | 금액 |
| 계 | 34,464 | 22,630 | 18,578 | 12,809 | 5,875 | 7,692 | 3,202 | 1,270 | 157 | 49 | 6,652 | 810 |
| 긴급복지 | 26,716 | 21,058 | 17,298 | 12,449 | 5,219 | 7,479 | 2,621 | 910 | 157 | 49 | 1,421 | 171 |
| 서울형긴급복지 | 6,381 | 921 | 637 | 187 | 326 | 108 | 207 | 69 | - | - | 5,211 | 557 |
| 지역위기긴급기금 | 1,294 | 410 | 643 | 173 | 319 | 77 | 313 | 82 | - | - | 19 | 78 |
| 광역위기긴급기금 | 60 | 191 | - | - | 11 | 28 | 48 | 159 | - | - | 1 | 4 |
| 주거위기가정지원 | 13 | 50 | - | - | - | - | 13 | 50 | - | - | - | - |

< 예산현황 >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구 분 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25,103,000 | 21,666,840 | 86.3 | |
| 긴급복지 | 21,553,000 | 19,105,758 | 88.6 | 국 50%, 시 25%,(구 25% 별도) |
| 서울형긴급복지 | 1,900,000 | 1,897,082 | 99.8 | 시비 100% |
| 지역위기긴급기금 | 1,400,000 | 423,000 | 30.2 | 희망온돌 기금 |
| 광역위기긴급기금 | 200,000 | 191,000 | 95.5 | |
| 주거위기가정지원 | 50,000 | 50,000 | 100.0 | 민간자원 |

향후계획

- 위기가정 발굴시 신속지원 지속추진
- 긴급복지지원 탈락 가구에 대해 신속한 민간재원 투입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희망복지지원과장: 안찬울 (☎2133-7370) | 긴급복지지원팀장 : 기진세 (☎2133-7379) | 담당: 고영빈 (☎2133-7381) |
| | 담당: 정택 (☎2133-7383) | | |

4. 국민기초생활보장(맞춤형급여) 수급자 지원

추진배경
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

사업개요

- 지원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, 제7조, 제11조, 제12조
- 선정기준 :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
 - 급여별 선정기준 : 생계(기준중위소득 28%), 의료(40%), 주거(43%), 교육(50%)
 - 부양의무자 기준 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(단, 교육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)

추진실적

- 지원 인원 (’15. 9월말 기준, 시설수급자 포함)
 - 기초생계 : 140,118가구 198,294명 - 기초의료 : 150,327가구 219,767명
 - 기초주거 : 148,436가구 217,811명 - 기초교육 : 21,047가구 29,959명

〈 예산현황 〉 - 일반(국60%,시28%,구12%), 시설(국50%,시50%)
(단위 : 천원, ’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747,649,562 | 541,910,379 | 72.5 | |

- 맞춤형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발굴 추진
 - ’15.9월말 기준으로 개편전 대비 2만명 신규 선정완료

향후 계획

- 신규수급자 적극 발굴 및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원 : ’15.11월
 -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에 대한 맞춤형급여 전환 적극 추진
-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 확인조사 실시 : 연2회(상·하반기)

5. 정부양곡할인 지원

추진배경
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정부양곡을 50%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서민생활 안정대책 도모

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양곡관리법 제9조,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3
- 지원대상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사업내용
 - 공급가격 : 20kg 1포 기준 44,410원(지원 22,210원 본인 22,200원)
 - 구입상한 : 1인당 월 10Kg(단, 5인 이상 가구라도 매월 40Kg로 제한)
※ 1인가구의 경우 매월 10kg 구입 가능('15. 4월부터). 다만, 2인이상 가구는 7, 8월에 한하여 10Kg 신청 가능
 - 대금납부 : (급여공제)기초생계급여 수급자
(현금입금)기초의료·기초주거·기초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 - 공급방법 : 전국광역자활기업에서 직접배달(20kg 2,700원/10kg 2,400원)

추진실적

- 지원 인원
 -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: 월평균 30,854가구 32,780포
 - 기초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 : 월평균 9,116가구 10,663포

< 예산현황 > - (국비100%)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 기초주거·교육, 차상위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2,327,000 | 10,334,822 | 83.8 | 기초수급자 10,113,000 차상위계층 2,214,000 |

향후계획
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조금 교부 : 매월 10일

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: 안찬울 (☎2133-7370) 복지정책팀장 : 유규용 (☎2133-7397) 담당 : 송선미 (☎2133-7391)

6.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

추진배경

-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
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

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~3조, 시행규칙 제2~3조
- 지원내용
 - 생계급여(맞춤형 생계급여의 1/2), 교육·해산·장제급여(맞춤형 수급자와 동일)

추진실적

-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 : 총 94,179명(누계)
 - 서울형 12,185명, 수급자 61,308명, 타 복지 20,686명('13.7~'15.9.30)
 - ※ '15년 발굴 : 39,299명(서울형 2,556명 수급자 29,780명 타복지 6,963명)

〈예산현황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현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11,121,530 | 9,466,159 | 85.1 | |

-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주요기준 우선적용 : '15. 7. 1. 시행
 - 소득기준 변경 : 최저생계비 100% 이하 ⇒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
 - 제한대상 : 기초 수급자 ⇒ 맞춤형 급여 수급자(생계, 의료)
-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개편 적용 : '15. 10. 9. 시행
 -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
 - 재 산 :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 ※ (준용) '15년 긴급복지지원, 기초연금 기본재산액
 - 금융재산 : 가구당 2천만원 이하 ※ (준용) '15년 기초연금 금융재산 공제기준
 - 부양의무자 기준 : 선지원 후심의 시행
 - 부양의무자 자료 및 정보 미제출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, 기피 등 확인 시 우선지원하고 보장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

향후계획

-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: '15.9~12월
-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등 : '15.12월

작성자 희망복지정책과장 안찬울(☎2133-7370) 생활보장팀장 유규용(☎2133-7397) 담당: 이혜정·황은영(☎2133-7383)

7. 의료급여 사업

추진배경

-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시민을 위한 의료비용을 적기에 확보·지급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 고취

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의료급여법 제25조
- 지원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 236,611명('15.9월)
 - 1종 : 163,486명, 2종 : 73,125명(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종 구분)
- 사업내용
 -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지원
 - 자치구 교부(장애인보장구, 본인부담환급금 등),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급 등
 - 의료급여관리사(시 1명, 자치구 56명)을 통한 급여이용 관리·건강관리 상담·복지자원 연계서비스 제공

〈 예산현황 〉 - 국비 50%, 시비 5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852,900,000 | 754,804,131 | 88.5 | |

향후계획

- 수급권자 진료비 예탁 및 자치구 보조금 교부 : 매월 10~20일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수수료 지급 : 매월 20일

8.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
추진배경

-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대도시 맞춤형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

사업개요

- 근거 :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~3조
- 지원대상 : 맞춤형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 및 저소득보훈대상자
- 지원내용
 -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: 1인당 300천원(동복 200천원, 하복 100천원)
 - 중·고등학생 교통비 : 1인당 연 311천원(720원×2회×216일)
 - 명절위문품비 : 가구당 30천원, 연 2회(설, 추석) 지원
 - 월동대책비 : 가구당 50천원(저소득보훈대상자 포함)

추진실적

- 명절위문품비 (설 129,546가구, 추석 137,470가구)
 -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(동복 4,281명, 하복 4,330명)
 - 중·고등학생 교통비(1분기 15,441명, 2분기 15,860명, 3분기 17,428명)
- 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22,231,232 | 13,585,999 | 61.1 | |

향후계획

- 월동대책비 지원 : '15.11월
- 4분기 중·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: '15.12월

작성자 | 희망복지정책과장 안찬울(☎2133-7370) 생활보장팀장 유규용(☎2133-7397) 담당 황은영(☎2133-7389)

9. 푸드뱅크·마켓 / 희망마차 운영지원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생산·유통·판매·사용과정의 식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
- 미수급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을 발굴 민간기부 자원 연계 물품 즉시 지원

□ 사업개요

① 푸드뱅크·마켓운영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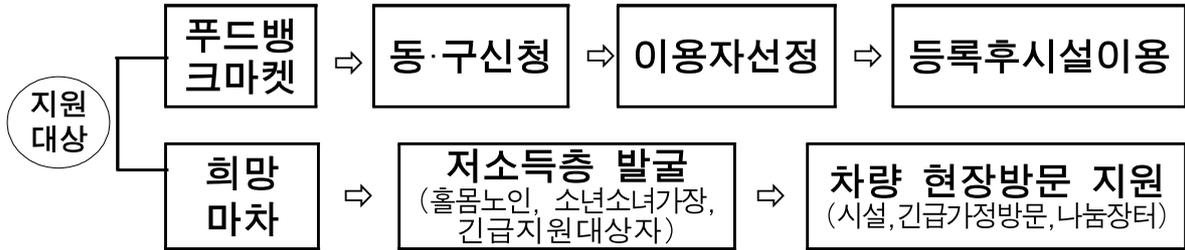
- 사업근거 :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
 - 사업대상 : 복지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긴급복지대상, 차상위계층 등)
 - 목 표 : 340억원 ※ '14년 목표 320억원, 실적 390억원
 - 사업내용 : 53개소(푸드뱅크 : 총 26개소, 푸드마켓, 총 25개소, 푸드나눔카페 2개소)
 - 이용절차 : 동, 구청신청 → 이용자 선정 → 등록 후 이용
- ※ 광역푸드뱅크 마켓 이전추진

- ◆ 「행복 4구 Plan」 발표(창동·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) : '14. 1~
- 동북4구(성북, 강북, 도봉, 노원)발전 추진계획에 따라 이전부지 물색
- ◆ 추진경과 : 강서구 마곡역(5호선) 지상부지 도시철도공사와 사용 협의 중
※ 광역푸드뱅크 대체부지로 적합함에 따라 지상부지(7,329㎡) 중 일부(2,800㎡)를 푸드뱅크 이전 부지로 활용방안 논의

② 희망마차 운영

- 사업목표 : 26,000가구 지원(연중 상시운영)
 - 지원대상 : 저소득 취약계층(홀몸노인, 소년·소녀가장, 긴급지원 대상자 등)
 - 지원품목 : 식료품, 생활용품, 자원봉사 등
 - 운영방법 : 희망마차 차량을 이용한 현장방문 지원(현물, 자원봉사 등)
- 나눔장터개설, 시설 및 위기긴급가정 방문 지원
 - 기관별 역할 : 市(총괄계획, 업무지원),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(운영), 이마트(후원)
- ※ 이마트와 3년('13.3월~'16.2월)간 1,260백만원 후원협약

지원절차



추진실적

○ 푸드뱅크·마켓

(단위: 개소/천원)

| 구 분 | 기부실적 | 배분실적 | 이용가구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계 | 30,580,271 | 29,634,607 | |
| 푸드뱅크 | 17,631,668 | 16,080,524 | 1,467개소 |
| 푸드마켓 | 12,948,603 | 13,554,083 | 230,405가구 |

○ 희망마차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운영횟수 | 지원세대 | 환산금액 | 지원품목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|
| 희망마차 | 144 | 80,963 | 2,182,586 | - 식료품 세트(쌀, 라면, 떡국떡, 햄 등) - 보온용품(담요, 목도리, 장갑 등) - 법률상담, 문화공연 등 재능기부 |

○ ‘14년 정부합동평가(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) 결과 “가” 등급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구 분 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계 | 1,773,545 | 1,761,728 | 99.33 | |
| 푸드뱅크·마켓 | 1,712,133 | 1,700,316 | 99.3 | 분기별 집행 |
| 희망마차운영 | 61,412 | 61,412 | 100.0 | |

향후계획

○ 푸드뱅크·마켓 후원자 감사의 밤 행사

: ‘15.12월

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: 안찬울(☎2133-7370) 민간자원협력팀장: 경자인(☎2133-7386) 담당: 오진용(☎2133-7388)

10. 희망온돌 『행복한 방만들기』 사업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대상 민간의 물품후원 및 재능기부 등을 통해 도배, 장판 등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

사업개요

- 근 거 :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- 대 상 : 저소득, 취약계층 가정 등 어려운 이웃
- 지원내용 : 도배, 장판, 집수리, 방충망, 보일러 점검 및 교체 등
- 방 법 : 민간기업 후원과 재능 및 자원봉사

추진실적

(단위 : 가구)

| 합계 | 도배·장판 등 | 보일러 점검 등 | 기타 지원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23,787가구 | 9,114가구 | 5,698가구 | 8,975가구 |

< 예산현황 > - 출연금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희망온돌 기금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
| 100,000 | 68,228 | 68.2 | |

향후계획

- 주거취약가구별 맞춤형 '행복한 방만들기' 추진(연중)
 - 사례관리사, 더함복지상담사, 나눔이웃 등을 적극 활용해 대상가구 발굴
 - 해당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개선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

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: 안찬율(☎2133-7370) 민간자원협력팀장: 경자인(☎2133-7386) 담당: 김태연(☎2133-7396)

2015년 주요업무보고

2015. 11. 19

어르신복지과

1. 기초연금 지급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

□ 사업개요

- **근 거** :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- **대 상 자** : 만 65세 이상, 소득 하위 70% 어르신
 - (소득인정액 요건) 소득·재산 수준(소득인정액)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
 - ※ '15년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93만원, 부부가구 148.8만원
 - 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- 소득평가액 = 소득 항목별 합계 - 근로소득 공제(52만원 기본공제 후 30% 추가공제)
 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- 2,000만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 환산율(연 5%) ÷ 12월
 - * 기본재산액 공제 : 대도시(1억3천5백만원), 중소도시(8천5백만원), 농어촌(7천2백5십만원)
- **연 금 액** : 월 2만원 ~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원
 - ※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 최대 202,600원으로 인상('15.4월~'16.3월적용)
- **2015년 예산** : 1조 4,577억원(국비 1조364억원, 시비 2,181억원, 구비 2,032억원)
 - 분담비율 : 국비 71.1%, 시비 15.0%, 구비 13.9%
 - 국비분담 :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1항 별표1

| 구 분 | | 노인 인구 비율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| 14%미만 | 14%이상~20%미만 | 20%이상 |
| 재 정 자 주 도 | 90%이상 | 40% | 50% | 60% |
| | 80%이상~90%미만 | 50% | 60% | 70% |
| | 80%미만 | 70%(21개구) *성동, 서초, 강남 등 | 80%(4개구) *종로, 중구, 용산, 강북 | 90% |

- 시비분담 :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 - 시비, 구비 분담비율 50:50 원칙
 - 단,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평균미달 및 노인 인구수와 노인인구 비율이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55:45(7개구: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은평구, 동작구, 관악구)

추진실적

- 수급자수 : 660,383명 (수급율 52.74%)
- 2015년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결정 통보 : '15. 4. 1
 - 단독가구 월 최고 20만 2,600원, 부부가구 월 최고 32만4,160원('15.4월~'16.3월)
 - ※ 단독가구 월 최고 20만원, 부부가구 월 최고 32만원('14.7월~'15.3월)
- 서울시 거주불명노인 실태조사 추진
 - 조사기간 : 2015.8.10. ~ 8.21
 - 조사결과

| 구분 |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 (65세 이상, A) | 기초연금 수급자 (B) | 조사대상자 (C=A-B) | 조사결과 (기초연금 수급가능자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시 | 37,311 | 88 | 37,223 | 1,994 |

〈 예산집행현황 〉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1,254,519,716 | 1,084,033,586 | 86.4 | |

향후계획

- 기초연금 보조금 지급 : 매월
 - 월별 자치구 예산교부 및 집행정산 등 월별분석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추진
- 기초연금 자치구별 향후 소요액 최종 파악 : '15. 11월
 - 자치구별 향후 소요액을 파악하여 과부족 발생시 자치구간 변경내시 준비

2.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65세 이상 저소득층 또는 거동불편 어르신(기초수급권자 등)을 양로·요양시설에 보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 지원

사업개요

- 근거 :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7조(어르신생활시설 운영)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
- 사업대상 : 어르신생활시설 155개소 (양로시설 7, 요양시설 148개소)

| 구분 | 대상 | 양로시설 | | | 노인요양시설 | 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| | 소계 | 시립 | 법인 | 계 | 운영비(식비포함)지원 | | | 식비 지원 | | | |
| | | | | | | 소계 | 시립 | 법인 | 소계 | 시립 | 구립 | 법인 |
| 시설수 | 155개소 | 7 | 2 | 5 | 148 | 17 | 5 | 12 | 131 | 6 | 29 | 96 |
| 입소정원 | 8,105명 | 422 | 208 | 218 | 7,683 | 1,956 | 795 | 1,161 | 5,727 | 127 | 1,296 | 4,304 |
| 종사자 | 3,483명 | 103 | 51 | 42 | 3,380 | 1,180 | 488 | 692 | 2,200 | 67 | 775 | 1,358 |
| 기초수급자 | 2,396명 | 359 | 181 | 178 | 2,037 | 1,603 | 639 | 964 | 434 | 13 | 84 | 337 |

- 사업내용 : 어르신생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
 - 무료양로시설(7개소) 운영비 등 지원
 - 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 7월) 이전 등급외자 요양급여지원
 -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비급여 항목, 시립시설 추가 지원 종사자 인건비
-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 : '15. 3월~10월
- 2015년 예산 : 10,643,841천원(국비 18%, 시비 82%)

추진실적

- 어르신생활시설 운영보조금 및 식비보전비 지원
 - 양로시설 : 7개소, 노인요양시설 : 63개소
- 어르신생활시설 요양보호사(500명 대상) 직무교육 실시 : 4회 406명(5~8월)
- 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자치구별 실시 : 25개구 50명 활동(연중)

작성자 | 어르신복지과장 : 하영태 (☎2133-7400) 여가요양팀장 : 정대희 (☎2133-7423) 담당 : 정태영 (☎2133-7427)

〈 예산현황 〉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10,643,841 | 9,405,008 | 88.4 | |

향후계획

-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지급(분기별) : ~ '15. 12월
- 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: 연중(시설별)
 - 시립시설 및 자치구 별 교육실시(노인보호전문기관 협조)

3.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부담금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(기초수급자 포함)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소요예산 확보로 안정적인 요양보호서비스 실시

□ 사업개요

- 근거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- 사업대상 : 노인성 질환을 가진 기초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~5등급자로 판정받은 요양대상자
- 사업내용(부담금 범위)
 - 시설급여 : 노인요양시설 입소(1·2등급, 3·5등급 중 시설급여 인정자)
 - 재가급여 : 방문요양·목욕·간호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시설 이용, 복지용구 구입
 - 의사소견서, 방문간호사 지시서 발급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
- 우리시 급여 부담비율
 - 기초수급자 : 장기요양 1~5등급 요양급여비용 전액
 - 의료수급자 : 장기요양 1~5등급 본인부담(10%)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45% 부담(국가 45%)

□ 추진실적

- 대상자 : 10,197명(기초생활수급자 9,454명, 기타의료급여자 743명)
※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('15.7월말)

- '15년 건강보험공단 추계액(시 97,154백만원, 자치구 20,530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계 | 시설급여 | 관리운영비 | 재가급여 |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| | 소계 | 시 | 자치구 |
| 부담금 | 117,684 | 60,483 | 5,075 | 52,126 | 31,596 | 20,530 |

작성자 |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(☎ 2133-7400) 어르신시설팀장 정대회 (☎ 7423) 담당 : 안경숙 (☎ 7424)

〈예산현황〉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92,725,302 | 92,725,302 | 100 | |

○ '15년 추계액 및 조정액

(단위 : 백만원)

| 추계액 | 납부액(구비포함) | 부족액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|
| 117,684 | 113,256 | 4,428 | |

※ '15년도 추계액 대비 4,428백만원 부족예상 하였으나 7월까지 정산결과 조정금액을 제외한 부족분 2,626백만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월액(14년말기준 29,540백만원)에서 대체예정

○ 재가급여 시·자치구 분담내역

- 분담액 및 분담 비율 : 시비 316억원(61%), 구비 205억원(39%)
- 자치구별 시비분담 기준

(단위 : %)

| 구 분 | | ②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100분의 3 미만 |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.5 미만 | 100분의 5.5 이상 100분의 8 미만 | 100분의 8 이상 | |
| ①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| 100분의 75이상 | 100분의 30 종로, 중구, 용산 서초 | 100분의 40 송파, 영등포 | 100분의 50 강 남 | 100분의 60 - | |
| |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| 100분의 43 성동, 마포 금천, 강동 | 100분의 53 동대문, 동작 | 100분의 63 | 100분의 73 강 서 | |
| | 100분의 55미만 | 100분의 56 광진, 서대문 | 100분의 66 중랑, 성북, 강북, 도봉, 은평, 양천, 구로, 관악 | 100분의 76 | 100분의 86 - | 100분의 86 노 원 |

※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적용

4.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어르신복지시설의 확충과 기존 운영시설의 개·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

사업개요

- 근거 : 노인복지법 제35조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
- 사업내용 : 증·개축, 개보수, 장비보강,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
- 2015년 예산 : 7,521,819천원(국비 30%, 시비 70%)
 - 국비 지원 사업(개소) : 증축1,개보수14,장비보강2, 안전장비367
 - 노인종합복지관(개소) : 개보수23, 장비보강13

추진실적

- '15. 4. : '15년도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- '15. 5. : '16년 사업신청서 제출 (국비50:시비50, 시→복지부)
 - 22개소 5,034,514천원 (증·개축 2개소, 개보수12개소, 장비보강 8개소)
- '15. 8. :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추경 반영
 - 23개시설 539,421천원
- 노인요양시설 증·개축 추진 : 2개소
 -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(영등포), 붓다마을(은평)

< 예산현황 >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7,521,819 | 4,661,857 | 58.3 | |

향후계획

- '15년 예산 교부 및 사업비 집행 : '15.11월 ~ 12월

| | |
|-----|---|
| 작성자 | 어르신복지과장: 하영태(☎2133-7400) 어르신시설팀장: 정대회(☎2133-7423) 담당: 김성민(☎2133-7427) 서세환(☎2133-7431)) |
|-----|---|

5.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어르신들의 취미·여가·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노년층 수요 대비 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주거 밀착형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

□ 사업개요

- 근거 :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, 동법 제23조의 2 및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, 동법 제45조,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
- 지원대상 : 자치구 및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관련 사업 규정이 있는 법인
- 지원내용
 -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: 10개소, 4,500백만원
 - 건물임대형 데이케어센터 임대보증금 지원 : 5개구 7개소, 253백만원
 - ※ 성동, 성북(2), 은평, 구로, 관악(2)
 - 유상임차시설 중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임차하는 시설
 -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관련 현 임대보증금의 9/100의 금액 한도 내 지원
 - 치매(등급외자)전용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 : 1개소, 100백만원
 -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: 1개소(은평), 1,000백만원
 - '15년 신축, 증축, 리모델링 지원단가에 건립규모를 곱하여 산정하되 지원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
 - ※ 2014년 지원단가(천원/㎡) : 신축 2,255, 수평증축 2,210, 수직증축2,147, 리모델링 1,646
 - 총면적 500㎡ 이상, 부지확보 및 운영비는 각 자치구에서 부담(조건)
 -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기술용역 : 1건, 200백만원
 - 용역명 :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
 - 용역내용 : 요양원 현황 분석, 장래 수요 예측, 기본계획 수립 등
 - 용역기간 : 2015. 6월 ~ 11월
- 2015년 예산 : 6,083,400천원(시비 100%)

작성자

어르신복지과장 : 하영태(☎2133-7400) 재가복지팀장 : 신상하(☎2133-7418) 담당 : 최경희(☎2133-7421)
어르신시설팀장 : 정대희(☎2133-7423) 담당 : 서세환(☎2133-7431)

추진실적

- '15. 2. :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
- '15. 5. : 공공요양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
- '15. 5. : 입찰공고(조달청 나라장터)
- '15. 6 : 공공요양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
- '15. 7. :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(1개구 - 송파구)
- '15.10. :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보조금 신청(구→시) 및 교부
- '15.10. :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(3개구 - 영등포구, 중랑구, 동작구)

< 예산현황 >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9,083,400 | 5,294,919 | 58.3 | |

향후계획

-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 : 수시(자치구 신청에 의거)
 - 치매 등급외자 전용데이케어 설치 지원(영등포) : 1개소(11월) 1억원 집행예정
- 공공요양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완료 : '15. 11월

6.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어르신돌봄 종사자들의 신체적·육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,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

사업개요

- 근거 : 노인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·지정계획 (어르신복지과-6025, '13.3.26)
- 사업내용 : 영양보호사 등 사회적 인식제고 및 권익 향상 사업
노인돌봄종사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
- 2015년 예산 : 609,886천원(시비 100%)
 - 서북권(운영비) 259,886천원
 - 동남권(운영비) 290,000천원, 설치비(60,000천원)

추진실적

- 은평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개관 : '13. 9월
- 2015년도 사업계획 수립 (은평구, 돌봄센터) : '15. 2월
- 은평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급 (3회) : '15. 3~7월
- 은평 어르신돌봄센터내 종사자 쉼터 설치 : '15.9.30

< 예산현황 >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609,886 | 414,499 | 68.0 | |

향후 계획

- 서남권(구로구)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: '16. 3월

작성자 | 어르신복지과장: 하영태(☎2133-7400) | 어르신시설팀장: 정대희(☎2133-7423) | 담당: 김성민(☎2133-7425)

7. 노인종합복지관 운영

추진배경

-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르신 문제 해결 지원을 통해 고품질 복지서비스 제공

사업개요

- 근거 :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
- 시설현황 : 32개소(시립19, 구립12, 사립1)
 - 규모 : 면적 3,000 m^2 내외, 종사자 24명(노인복지센터 43명)
 - 이용대상 : 만 60세 이상
 - 주요사업 : 평생교육지원, 취미여가지원, 고용지원(일자리사업 등), 기능회복지원, 정서생활지원, 사회참여지원(자원봉사 등), 경로당혁신프로그램 등
- 운영방법 :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
- 지원대상 : 22개소(시립 19개소, 구립 3개소)
 - 시립노인복지관 : 19개소
 - 구립노인복지관 : 양천구, 영등포구, 송파구

추진실적

- 이용자 현황 : 1일 이용인원 36,998명/22개소, 시설당 1일 평균 1,156명 이용
- 지원대상 : 22개소(시립 19, 구립 3)
 - ※ 자치구 지원 기준 :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% 미만 자치구
- 지원규모 : 시립(운영비 100%), 구립(운영비 80%) (시비 100%)
- 지원내용 : 인건비, 시설운영비, 사업비

< 예산현황 >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29,759,576 | 29,151,101 | 99.3 | |

향후계획

-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위탁 재계약 추진 : '15. 11월~12월

작성자 | 어르신복지과장: 하영태(☎2133-7400) | 어르신시설팀장: 정대희(☎2133-7423) | 담당: 서세환(☎2133-7431)

8.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사업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경로당 어르신들이 개방적·생산적 활동을 위한 기존 여가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는 특화사업 도입 지원

사업개요

- 근 거 :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
- 사업대상 : 전체 경로당 ('15.10월말 기준 3,333개소)
- 사업내용 : 경로당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활동적·생산적 프로그램 (텃밭가꾸기·콩나물 재배 등) 개발·운영
- 지원내용 : 자치구별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(25명) 인건비 및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비 지원

추진실적

- ▶ 자치구별 공모를 통해 특화프로그램 발굴하여 3,101개소 경로당에서 개방형 경로당 추진(카페형·돌봄형·동아리형·도서관형·소득형·영화관람형) 및 우선사업(영구임대아파트 내 콩나물재배, 광역강연프로그램, 치매검사 프로그램) 이외의 텃밭가꾸기·자원봉사(지역청소) 등 84개 사업 추진

○ 프로그램 유형

| 유형 | 유형 | 주요 내용 |
|----|---------|---|
| 1 | 개방형 경로당 | · 카페형, 돌봄형, 동아리형, 소득형, 영화관람형 등 |
| 2 | 우선사업1 | · 영구임대아파트 내 콩나물재배 및 텃밭가꾸기 등 |
| 3 | 우선사업2 | · 광역 강연프로그램(거점 경로당 강연프로그램) |
| 4 | 우선사업3 | · 경로당 순회 치매검사 프로그램 |
| 5 | 텃밭가꾸기 | · 경로당 공동작업(주말농장, 상자텃밭, 콩나물 재배 등 직접경작 사업) |
| 6 | 자원봉사형 | · 경로당 공동 자원봉사(노노케어형, 동네청소, 교통정리, 지역사회 공동시설물 관리) |
| 7 | 개방형 | · 경로당을 지역사회에 개방, 2·3세대 공유(유아놀이방, 청소년 공부방·도서관) |
| 8 | 학습형 | · 새로운 학습(공동학습을 통한 자격증 취득, 새로운 일거리 개발 등) |
| 9 | 공동작업장 | · 분재 등 건강형 신규 아이디어 발굴(기존 어르신일자리사업과 중복 제외) |
| 10 | 기 타 | · 그 밖의 특화사업으로 시가 승인한 사업 |

< 예산현황 >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700,000 | 692,000 | 98.9 | |

작성자 | 어르신복지과장: 하영태 (☎2133-7400) 어르신정책팀장: 서형석 (☎2133-7409) 담당: 박영실 (☎2133-7407)

9.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

추진배경 및 목적

-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에게 안전확인, 서비스 연계, 가사 및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함

사업개요

- 근 거 : 노인복지법 제27조,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

1. 노인돌봄기본서비스

- 지원대상자 :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
- 서비스내용 : 안전확인, 정서적 지원,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, 서비스 연계 등
- 이용자부담 : 무료(공급자 지원 방식)
- 사업비 : 7,182백만원(국비 4,919백만원, 시비 2,263백만원, 구비 별도)
 - 분담비율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2. 노인돌봄종합서비스

- 지원대상자 : 만 65세 이상의 노인(독거노인) 또는 고령(부부 모두 만75세 이상)의 부부 노인가구
(건강기준)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, B
(소득기준)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이하
- 서비스내용 : 가사·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
- 이용자부담 : 무료~64,000원(바우처방식)
- 사업비 : 5,238백만원(국비 3,492백만원, 시비 1,746백만원, 구비 별도)
 - 분담비율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작성자

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(☎2133-7400) 재가복지팀장 신상하 (☎2133-7418) 담당: 최경희 (☎2133-7421)
이혜경 (☎2133-7422)

3. 단기가사서비스

- 지원대상자 :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(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)의 부부 노인가구
(건강기준) 골절(관절증, 척추증 포함)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중 택1 제출
(소득기준)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이하
- 서비스내용 : 가사·일상생활 및 신변·활동지원(취사, 청소 외출동행 등)
- 이용자부담 : 무료~64,000원(바우처방식)
- 사업비 : 459백만원(국비 306백만원, 시비 153백만원, 구비 별도)
 - 분담비율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4. 사랑의 안심폰 사업

- 지원대상자 :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중 거동불편, 질병 보유자 등
- 서비스내용 : 어르신돌보미 1명과 독거어르신을 영상폰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안전확인 시스템 운영
- 이용자부담 : 무료(공급자 지원 방식)
- 사업비 : 830백만원(시비100%)

5.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

- 지원대상 :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어르신
- 지원내용 : 가스타이머, 점·소등 리모컨, 싱크대 높낮이 개조,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주거환경개선
- 사업비 : 250백만원(시비100%)

6. 재가어르신 돌봄통합시스템 운영 및 사례관리

- 지원대상 : 약 253천명(사례관리대상 : 64,910명)
- 주요기능
 -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공공서비스(기초연금, 국민기초수급비용, 무료급식, 주거지원 등) 및 민간서비스(후원금, 식생활지원 등) 실시간 관리
 - 돌봄서비스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중복서비스 예방 및 조정기능 수행
 - 수혜대상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가능
 - 수행기관별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계관리, 실적 모니터링 관리
 - 민·관에서 지원되는 복지·보건서비스의 통합관리 가능
- 사용대상 : 자치구, 서울재가관리사, 서비스수행기관(돌봄통합센터, 노인 종합복지관, 재가노인지원센터, 종합사회복지관, 치매지원센터 등)
- 사업비 : 627,887천원(시비100%)

7. 어르신 돌보는 가족휴가제

- 사업대상 : 1,000명 이내
 - 집에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이나,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을 직접 돌보고 있는 가족
<프로그램>
 - 수요자 욕구에 따라 개인별, 단체별, 서재협 주관 단체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, 여행기간은 당일, 1박2일, 2박3일 중 선택가능
 - 1인당 소요예산 30만원 이내
<어르신돌봄프로그램>
 - 대체돌봄 거점 단기보호기관을 지정하여 3일내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
 -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1박당 3만원의 돌봄비용 지원
- 사업비 : 417,768천원(시비 100%)

추진실적

- 노인돌봄서비스 지침 안내 및 교육 : '15.1월
-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독거노인 현황조사 : '14.12월 ~ '15.3월
- 대상자 선정 및 지원 : '15. 1월~5월
 - 지원대상자 : 30,392명(기본 21,356명, 종합 2,490명, 단기가사 46명, 안심폰 6,500명)
 - 노인돌봄서비스 보조금 지급 : 5회(1.19, 2.11, 3.16, 4.7, 5.7)

< 예산집행현황 >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15,495,545 | 14,296,323 | 92.3 | |

※ 노인돌봄서비스(기본, 종합, 단기가사)외의 사업은 시비 100% 사업임(안심폰, 주거환경개선사업, 돌봄통합시스템 운영, 가족휴가제 등)

향후계획

- 돌봄가족휴가제 시범사업('15.6월)하여 확대실시 : '15. 8월~
-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적극 발굴 : '15. 7월 ~
- 노인돌봄서비스 보조금 지급 : 매월
- '15년 돌봄서비스 관련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: '15.10월~

10.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에 따라 추모공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곡종합복지관을 건립 함

사업개요

- 근 거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항,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(시장방침 '09.11.21.)
- 위 치 : 서초구 신원동(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내 도서관용지)
- 규 모 : 부지 1,322㎡, 총면적 3,177㎡(지하1층, 지상4층)
- 총 사업비 : 14,109백만원(시비 9,909백만원, 구비 4,200백만원)
 - 시비 : 14년 603백만원, 15년 4,563백만원, 16년 1,157백만원, 17년 3,586백만원
 - 구비 : 14년 764백만원, 15년 408백만원, 16년 399백만원, 17년이후 2,629백만원

추진실적

-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(서초구) : '12. 8. 20.
- 투자심사 통과(결과:조건부) : '12. 10. 8.
- 부지매입계약(서초구-SH공사) : '13. 12. 23.
- 기본설계 완료 : '15. 10월

< 예산집행현황 >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4,652,834 | 4,652,834 | 100 | |

향후계획

- 실시설계 완료 : '16. 2월
- 착 공 : '16. 5월 / ○ 준 공 : '17. 10월

11. 망우리 묘지공원 인문학적 길 조성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자연생태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힐링장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친자연적이고 성찰과 사색의 공간이 되도록 조성

사업개요

- 근 거 : 시장 지시사항 (2014.6월)
 - 독일이나 일본의 ‘철학의 길’ 사례를 조사하여 망우리묘지공원에 인문학적 길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
- 지원대상 : 망우리묘지공원 내 인문학적 길 조성
- 규 모 : 망우리묘지 기존 둘레길 2개코스 8km
- 사업내용
 - 1차분(340백만원) : 설계용역 및 기반시설 정비(2015. 4 ~ 2016. 5)
 - 2차분(1,120백만원) : 인문학적 길 조성(2016. 5 ~ 12)
- 총사업비 : 1,460백만원 (’15년 340백만원, ’16년 1,120백만원)

추진실적

- 공단 및 서울시 기본설계(안) 보고 완료(’15.7.21)
- 유흥준 교수(전 문화재청장) 자문회의 실시(’15.8.6)
- 구리시 사전 개발행위허가(안) 신청 및 국방부(56사단) 협의(’15.8.17)
-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진행(~’15.10월)
- 유관기관(구리시, 중랑구, 국방부, 문화재청 등) 허가·신청 협의 : ’15. 10월

< 예산현황 >

(단위 : 천원, ’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340,000 | 273,700 | 80.5 | |

향후계획

-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: ’15. 11월

작성자 | 어르신복지과장 : 하영태 (☎2133-7400) | 장사문화팀장 : 이영우(☎2133-7428) | 담당 : 이은선(☎2133-7432)

2015년 주요업무보고

2015. 11. 19.

인 생 이 모 작 지원 과

1. 50+재단 설립 관련 보고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가장 큰 규모의 미래 노인세대인 장년층의 등장
 - 서울시 장년층(50~64세)은 '15년 현재 214만명(21.7%)
- 장년층이 사회보장체계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부상
 -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로 인한 노후소득 공백, 노후준비 부족
 - ※ 평균 퇴직연령 49세, 직장 사정에 따른 퇴직 45% 【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('15.5월)】
-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와 차별화된 특성과 욕구 보유
 - 전문대 졸 이상 35.6%, 소득수준의 경우 중상위 계층 이상이 68.6%
 - ※ 노인의 전문대학 졸업자 12%, 노인빈곤율 '13년 45.7%

⇒ 미래 노인세대인 장년층의 노후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은퇴 후 인생재설계를 지원하고자 50+재단 설립

□ 50+사업 추진체계 : 市 총괄, 50+재단, 50+캠퍼스·센터 운영

| 단 계 | 주요역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서울시 | ▶ 50+정책 추진 총괄 |
| ↓ | |
| 50+재단 | ▶ 50+싱크탱크, 서비스 제공, 관계망 구축 - 비전제시, 사업 기획·개발, 조사·분석·연구 - 50+캠퍼스 운영, 50+센터 운영지원 및 평가 |
| ↓ | |
| 50+ 캠퍼스 (재단 운영) | ▶ 50세대의 일, 배움, 복지의 복합공간 - 상담, 교육, 재취업 지원, 사회공헌, 문화여가건강 프로그램 등 - 경력살림형 창직 및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|
| ↓ | |
| 지역별 50+센터 (자치구 운영) | ▶ 50+ 캠퍼스 지역기반 플랫폼 - 50세대의 지역활동 지원, 맞춤형 교육, 사회공헌 등 상담 |

작성자 | 인생이모작지원과장 : 이성은(☎2133-7795) 인생이모작정책팀장 : 변경옥(☎2133-7797) 담당 : 박지연(☎2133-7798)

□ 재단 설립 개요

○ 주요사업

- 인생재설계 지원 : 권역별·지역별 상담센터를 통해 인생재설계 종합상담, 인생재창조, 직업능력 과정 등 운영
- 50+세대 일자리 창출 : 전문 경력을 활용한 보람일자리,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 설립 지원, 창업·창직 지원
- 50+세대 사회공헌 지원 : 사회공헌 수요처 발굴, 참여자 교육·연계, 수행기관간 네트워크, DB 구축
- 50+커뮤니티 활성화 : 소규모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, 커뮤니티 리더 육성 등

○ 기구·운영 인력(안) : 1단 3팀 18명

-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4개의 단위조직 (1단, 3팀)으로 구성
※ 50+일자리 관련 '일자리사업단' 별도 운영

○ 소요예산 : '16년 30억원 예상(초기비용 13억, 경상비 17억)

- 초기비용(13억) : 기본재산 7억, 임대료 2억, 전산개발 및 자산취득비 4억
- 경 상 비(17억) : 사업비 7억, 인건비 8억, 운영비 2억

□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○ 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: '14.12~'15.7

- 50+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: '14.12.26~'15.4.25
- 재단 설립 관련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완료 : '15.6.16~7.3
 - ▶ 종합의견 : 재단 설립 필요성 인정(다만, 현재 운영 중인 출연기관과 일부 업무중복에 따른 조정과 서울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단의 자체수입 확충 노력 필요)

○ 50+재단 조례 제정 및 시행 : '15.6~'15.10

- 조례안 입법예고 : '15.7.9 ~ 7.29
- 시의회 의결(제263회) : '15.9.18
- 조례 공포 : '15.10.8

○ 재단 설립 및 캠퍼스 추진단 운영 : '15.11~'16.1

○ 재단 출범 : '16.2월 초

2. 50+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 추진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서울시 50+세대 인생재설계에 대한 심층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, 정책대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- 단순 실태 및 욕구조사를 넘어 50+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인적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

□ 사업개요

- 용역명 : 50+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
- 용역기간 : 5개월('15.5.12~10.28)
- 용역비 : 56백만원(수행기관 : 장애파트너스그룹)
- 용역내용
 - 50+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애로사항, 욕구 파악
 - 서울시 50+사업 관련 니즈 발굴 및 수요 분석
 - 서울시 50+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

□ 세부과업내용

- 대상 : 서울시 거주 만 50~64세 남녀 1,000명

| 구분 | 조사방법 | 표본수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기초 분석 |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| - | ▶50+세대 특성 가설 수립 ▶50+세대 관련 정부 정책 현황 ▶서울시 베이비부머 정책 현황 |
| | 현장 방문 | 2명 | ▶50+세대 특성과 정책수요 연계성 진단 |
| 조사 진행 | 정성조사 (좌담회) | 4그룹 (각 4~5명) | ▶개별 욕구 파악 및 심층이해 |
| | 정성조사 (좌담회) | 2그룹 (각 4~5명) | ▶주요 정책대상 심층욕구 파악/정책 니즈 파악 |
| | 정량조사 (면접조사) | 1,000명 | ▶인생이모작 실태(재정, 직업, 노후생활 등) ▶인생이모작 욕구(경제적, 사회적, 신체적 욕구) ▶인생이모작 사업 및 정책 관련 요구사항 (서비스 요구도, 정책 수요 등) |
| 분석 및 정책방안 도출 | 자문회의 (2회) | 2명 | ▶1차 : 연구 방향성 및 설계 적절성, 세부 추진체계 점검 ▶2차 : 좌담회 결과 자문 및 지표설계 반영시 주안점 도출 |
| | 전문가 워크숍 (1회) | 4명 | ▶센터, 50+캠퍼스 활성화 방안 모색 ▶사업방향 및 정책 과제 시사점 도출 |

작성자 | 인생이모작지원과장: 이성은(☎2133-7795) 인생이모작정책팀장:변경옥(☎2133-7797) 담당: 박지연(☎2133-7798)

○ 조사내용 : 영역별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 총 170개 지표

| 분야(지표 수) | 내용 |
|----------------|---|
| 인구통계(10) | 나이, 성별, 직업, 지역, 주거형태 등 |
| 일과 직업(70) | 소득활동 여부, 퇴직 후 재취업 의향 및 준비 실태, (퇴직한 경우) 퇴직 시 애로사항 등 실태, 향후 일, 직업 관련 욕구 |
| 소득 및 자산(9) | 월 소득원천, 현재 자산부채지출, 은퇴 후 소득지출 준비관련 욕구 |
| 사회적 관계(5) | 가족외 사회적 관계망, 관계망 발전 관련 욕구 |
| 여가활동/사회참여(22) | 여가활동 실태, 여가방문 공간, 여가활동 관련 욕구 |
| 가족(21) | 자녀부양행태, (손)자녀와의 관계, 부모 부양행태, 배우자와의 관계, 가족관계 관련 욕구 |
| 건강(17) | 신체, 정신적 건강, 건강관리 활동 |
| 삶의 만족도(8) | 전체적, 영역별 만족도 |
| 50+공간 관련 태도(8) | 50+연관시설 이용의사 및 선호프로그램 |

< 예산현황 > - 시비 100.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63,000 | 56,000 | 88.9 | 10.28 준공 |

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- 착수보고 : '15.5.18
- 정성조사(1차 좌담회) : '15.7.2 ~ 7.3
- 정량조사(면접조사) : '15.7.27 ~ 8.21
- 중간보고 : '15.9.8
- 정성조사(2차 좌담회) : '15.9.17
- 최종 보고 : '15.10.27
- 계약 완료 : '15.10.28

3. 50+ 캠퍼스 확충

추진배경 및 목적

- 급증하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교육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부족
- 제2 인생설계, 사회공헌 교육, 재취업, 문화여가 등 종합서비스 시설 필요

사업개요

- 근 거 :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
- 추진현황 : 현재 3개소(은평, 마포, 구로) 추진 중, 2개소 검토 중

| 구분 | 위 치 | 공 종 | 건축규모 | 사업비 | 건립기간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은평 | 서울혁신파크 8동 | 리모델링 | -연면적: 3,956㎡, 지하1 지상4층 | 36억 | '15.3~'16.3 |
| 마포 | 구산업인력공단 별관동 | 리모델링 | -연면적: 4,509㎡, 지하1 지상4층 | 156억 | '14.7~'16.9 |
| 구로 | 천왕2지구 사회시설부지 | 신 축 | -연면적: 5714㎡, 지하3 지상4층 | 286억 | '13.8~'17.5 |

- 2015년 예산 : 11,885백만원(시비 100%)

추진실적

- 구로('15.7), 마포('15.7), 은평('15.9) 50+ 캠퍼스 설계용역 완료
- 50+ 캠퍼스 공간개선 자문단 구성, 자문내용 반영
- 은평('15.10) 착공, 구로 및 마포 공사 발주('15.10)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구분 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0+ 캠퍼스 | 11,885,437 | 2,003,625 | 16.9 | 토지비 중도금(26억) 12월 집행 예정(38.7%) |

향후계획

- 은평 50+ 캠퍼스 전환 내부공사('15.10월~'16.3월) 및 개관('16.4월)
- 마포, 구로 50+ 캠퍼스 공사 발주 및 착공('15.12월)
- 마포('16.9), 구로('17.5) 준공 예정
- 2단계 50+ 캠퍼스 건립 추진 계획 수립('15.12월)

작성자 | 인생이모작지원과장: 이성은(☎2133-7795) 인생이모작시설팀장: 김동은(☎2133-7808) 담당: 양홍모(☎2133-7809)

4. 구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베이비부머 세대 수요에 대비 교육, 사회공헌 등 기본기능에 중점을 둔 지역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구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지원

사업개요

- **근 거** :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(어르신복지과-8219, '14.4.22.)
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
- 구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추가 건립(총 20개소)
 - 50+ 캠퍼스 설치 지역(5개구) 외 자치구별 1개소씩 설치 확대
 - 자치구에 대한 건립비 지원,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센터 건립 활성화
- 2015년 예산 : 1,500백만원(시비 100%)

추진실적

- 동작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관 : '15.12월(예정)
- 영등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준공 : '15.12월(예정)
- 노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준공 : '16.4월(예정)
- ※ 구립 센터 건립을 위한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: '15. 4. 27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구분 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보조금 | 1,500,000 | 1,265,000 | 84 | 동작구 '15.8 건립비 지원 |

향후계획

- '16년 구립 센터 건립 수요조사 및 예산 반영 : '15.6월~12월
- ※ 50+ 캠퍼스와의 통합적 홍보를 위해 '인생이모작지원센터→50+센터'로 변경

작성자 | 인생이모작지원과장:이성은(☎2133-7795) 인생이모작시설팀장:김동은(☎2133-7808) 담당:김성혁(☎2133-7810)

5. 시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년층의 제2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, 재취업, 사회공헌·재능 나눔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활동 강화

사업개요

- 지원시설 : 2개소(서울, 도심권)
- 사업내용 : 인생재설계 프로그램(인문학 강의 등), 재취업(찾아가는 전직 지원서비스 등), 사회공헌 활동(생애설계상담 등), 커뮤니티 활동(공유교실 등) 지원
- 예 산 : 서울(702,448천원), 도심권(826,863천원)

추진실적

-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
 - 교육수료(인문학아카데미, 사회공헌아카데미 등) 3,074명
 - 일자리 상담 2,499명/ 구인처개발 507명/ 일자리 재취업 180명
 - 사회참여(전문자원봉사단, 온·오프라인 커뮤니티 등) 63단체 2,848명
-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
 - 교육수료(50+ SNS 교육, 사례로 풀어나가는 은퇴설계 등) 2,167명
 - 일자리 상담 4,129명/ 구인처개발 469명/ 일자리 재취업 116명
 - 사회참여(커뮤니티 지원,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) 106단체 1,120명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구분 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| 702,448 | 662,750 | 94.3 | |
| 도심권 | 493,827 | 487,128 | 98.6 | 임대료 연 333백만원 시 별도 지급 |

향후계획

- 서울 센터 리모델링 공사(센터→캠퍼스) : '15.10월 말 ~ '16.3월
- ※ 50+ 캠퍼스와의 통합적 홍보를 위해 '인생이모작지원센터→50+ 센터'로 변경

작성자 | 인생이모작지원과장 : 이성은(☎2133-7795) 인생이모작시설팀장 : 김동은(☎2133-7808) 담당 : 김성혁(☎2133-7810)

6.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(구, 어르신 일자리사업)

추진배경

-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의 사회참여 지원)
- 사업내용 :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총 43,838명 지원(연초 추진목표)
 - 공익활동 : 전국형, 지역형
 - 9개월/12개월, 월 30~35시간이상,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(단, 지역형의 교육형은 기초연금미수급자 참여 가능)
 - 취·창업활동 : 취업형(인력과견형), 창업형(공동작업형, 제조판매형)
 - 연중참여, 사업운영 형태에 따라 자율적 근무, 60세 이상
- 지원내용 : 참여자 인건비 및 수행기관 부대경비
 - 공익활동 : 인건비 1인당 월 20만원(9개월/12개월), 부대경비 연 13~16만원
 - 취·창업활동 : 취업형(수요처에서 임금부담, 부대경비 15만원), 창업형(사업단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, 사업비 공동작업형180만원, 제조판매형 200만원)

추진실적 : 44,402명 (공공 40,552 / 민간 3,850)

-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: '15.3.11.
-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교차, 중앙현장평가 : '15.5월 ~ 6월
- '16년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수요조사 : '15.6월
-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현장지도점검 : '15.6월~9월

〈 예산현황 〉 - 국비 30%, 시비 35%, 구비 35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61,404,675 | 60,777,519 | 98.9% | |

향후계획

-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: '15.11월 ~ 12월

작성자 | 인생이모작지원과장: 이성은(☎2133-7795) 인생이모작사업팀장: 하종익(☎2133-7804) 담당: 이정석(☎2133-7805)

7. 50+세대를 위한 보람일자리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회참여 기회 제공
- 은퇴 이후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고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

사업개요

- **근 거** :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(시장방침 제117호, '14.04.22)
- **사업내용** : 50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베이비부머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로 제공
- **지원대상** : 만 50세~64세 퇴직자 중 희망자
 - 시니어 마을로의 귀환 204명(시니어마을새내기, 사례관리서포터 등)
 - 경로당코디네이터 100명, 2090지혜아카데미 30명, 도시텃밭활동가 20명, 도농교류사업 100명, 시니어기자단 4명
- **지원내용** : 인건비 월 404천원
- **운영기관** :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
- **2015년 예산** : 1,600,000천원(시비 100%)

추진실적

-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(고용노동부 사업포함) : 총 1,094명
 - 시니어 마을로의 귀환, 경로당 코디네이터, 사례관리서포터, 도농일자리 등 442명
 - 고용노동부 사업 연계 등 외부자원 연계 652명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구분 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보조금 | 1,600,000 | 1,600,000 | 100% | |

향후계획

- 4분기 사업 운영 및 정산 : '15.10월 ~ 12월

작성자 | 인생이모작지원과장 : 이성은(☎2133-7795) 인생이모작사업팀장 : 하종익(☎2133-7804) 담당 : 이정석(☎2133-7805)

8. 어르신 취업지원시설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어르신 취업지원 시설을 통한 양질의 다양한 민간 일자리 개발, 취업 상담·알선으로 어르신 취업을 효율적·적극적으로 지원

사업개요

- 근 거 : 노인복지법 제23조
- 지원시설 : 29개소(일감뱅크팀 3, 노인종합복지관 취업상담·알선 25, 훈련센터 1)
- 운영인력 : 총 53명(일감뱅크팀 26, 노인종합복지관 취업상담·알선 25, 훈련센터 2)
- 지원내용 :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보조(어르신 취업지원 시설 운영지침 기준)
- 사업내용
 - 구인처 개발, 취업상담 알선, 구직자·구인처 사후관리
 -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종별 훈련과정 제공
 - 맞춤형 취업훈련과정 및 실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강좌 운영
- 2015년 예산 : 1,415,869천원(시비 100%)

추진실적

- 취업알선 : 지원시설 29개소, 취업실적 2,941명
 - 취업상담센터(훈련센터 포함) 2,645명
 - 인생이모작지원센터(일감뱅크) 296명
- 취업훈련 : 어르신취업훈련센터
 - 교육회수 : 47회, 신청인원 : 1,672명, 수료인원 : 1,309명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구분 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보조금 | 1,415,869 | 1,412,000 | 99.7% | |

향후계획

- 어르신 취업지원 시설 모니터링 실시(분기별) : '15.12월

작성자 | 인생이모작지원과장 : 이성은(☎2133-7795) 인생이모작사업팀장 : 하종익(☎2133-7804) 담당 : 이정석(☎2133-7805)

9. 시니어클럽 운영지원

추진배경

-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
- 시장진입형 민간일자리 사업 운영을 통해 노년기 소득창출에 기여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의 사회참여 지원)
- 사업대상 : 7개소(종로·도봉·관악·강남·은평·마포·송파)
- 사업내용 : 소득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일자리 마련
- 대상 : 60세 이상의 어르신
- 지원내용 : 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
- 지원기준 :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매칭부담(개소당 평균 250백만원)

| 구 분 |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자치구 재정자립도 | 50%미만 | 50%이상 ~ 70%미만 | 70%이상 ~ 90%미만 | 100%이상 |
| 부담률 (시 : 자치구) | 70% : 30% 도봉 | 60% : 40% 은평, 관악 | 50% : 50% 종로, 송파, 마포 | 30% : 70% 강남 |

추진실적

- 2015년 시니어클럽 운영계획 수립·시행 : '15.1.23.
- '15년 9월말 실적 : 7개소, 123개 사업단, 3,481명(고유사업 533명 포함)
- 어르신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: '15.5.26.
- 지하철택배 운영, 홍보 활성화방안 등 모색

〈 예산현황 〉 - 평균부담율 시비 52.86%, 구비 47.14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962,158 | 925,000 | 96.1% | |

향후계획

- 2016년 시니어클럽 운영 추진방향 수립 : '15.12월

작성자 | 인생이모작지원과장 : 이성은(☎2133-7795) | 인생이모작사업팀장 : 하종익(☎2133-7804) | 담당 : 이정석(☎2133-7805)

10. 시니어포털 「50+ 서울」 시스템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시니어 전문포털 「50+ 서울」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신노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및 온라인 소통공간 제공

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
- 추진방향 : 신노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포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
- 구축기간 : '13. 7. 30. ~ '14. 2. 10. ※ 오픈일 : 2014. 8. 4.
- '15년예산 : 159,790천원(시비 100%)
- 주요내용 : 일자리(구인·구직 맞춤형 일감정보), 교육(평생교육포털 연계 교육정보), 라이프(문화, 재무, 건강 등), 웹진/커뮤니티(카페, 블로그 등)

추진실적

- 운영 업체((주)위엠비) 계약 체결('15.5.8.) : 146,700천원
- 운영실적

| 구분 | 접속자 수 | 페이지뷰 수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'15년 실적 | 113,080명 | 761,629건 | '15.1.1.~'15.9월말 |
| 누적 실적 | 188,258명 | 900,490건 | '14.8.4.(오픈)~ |

< 예산현황 >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구분 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공운영비 | 159,790 | 73,350 | 45.9 | 용역 준공 시 잔금(73,350천원) 집행 예정(12월) |

향후계획

- 2016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추진 : ~ '15.12월
- 출납폐쇄기간 단축(12월말)에 따라,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
- 50+ 세대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확충 : ~ '15.12월

작성자 | 인생이모작지원과장 : 이성은(☎2133-7795) 인생이모작정책팀장 : 변경옥(☎2133-7797) 담당 : 정주애(☎2133-7799)

제 264회 시의회 정례회
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



2015년 주요업무보고

2015. 11. 19.

장애인복지정책과



1. 『서울시 하조대 희망들』 건립 추진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이동 불편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장애인 수련시설을 건립·운영, 장애인에게 희망과 자립·자활을 지원

사업개요

- 하조대희망들 건립부지 변경계획 수립('14.10.21)
- 위 치 :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-1
- 건축규모 : 연면적 5,395.92㎡(지상3/지하1)/ 토지 6,879㎡
- 주요기능 : 장애인 및 가족의 숙박·여가 지원
 - ※ 주민 의견 수렴하여 3층으로 증축, 서울시공무원 수련시설 또는 또는 공무원+장애인 이용 방안 등 검토
- 총사업비 : 14,538백만원
 - 공 사 비 : 13,290백만원 / 부지매입비 : 1,248백만원(기매입)

추진실적

-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위해 지역주민 반대민원 해결 노력
 - 방문 업무 협의(2. 4 / 3. 23), 군수·주민대표 면담(4. 6 / 4. 27 / 5. 13)
 - 국회 국정감사(보건복지부) 양양군수 참고인 채택 : 넘비현상 관련(9. 11)
- 양양군 건축협의 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 ⇒ 대법원 승소
- 예산현황 : 700,000(재원부담 : 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|
| 700,000 | - | - | ※ 불용 예정 |

향후계획

- 지역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민원해결 후 건립토록 노력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: 김홍식 ☎7442 담당 : 김희영 ☎7443

2.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 실현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63조 (단체의 보호·육성)
- 지원절차 : 사업비 신청 → 사업검토(승인) 및 사업집행 → 모니터링·자체평가 → 사업비 정산 →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
- 지원대상 단체 : 13단체 20개 사업

서울지체장애인협회,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, 서울농아인협회,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, 서울장애인복지시설협회, 서울장애인복지관협회,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, 서울시장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, 서울장애인고용안정협회,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, 곰두리봉사협회, 한국소아마비협회, 서울장애인인권포럼

추진실적

○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

-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바둑대회('15. 4. 18), 농아인한마음체육대회('15. 5. 2), 지적장애인 문화체육한마당('15. 5. 27), 장애인정보화축제('15. 5. 30)
- 장애인 기능경기대회('15. 7. 22 ~ 24), 장애인 무료해변캠프('15. 7. 17 ~ 8. 17) 수화문화제('15. 9. 19)

○ 예산현황 : 914,000(재원부담 : 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914,000 | 789,635 | 85.5 | 메르스 관련 일부 행사 4/4분기로 연기 |

향후계획

-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: 연중 실시
- 장애인단체 사업비 및 집행액 정산 : '15. 11~12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: 김홍식 ☎7442 담당 : 김용만 ☎7446

3.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

세부운영계획

- 대 상 : 학령기 이후 (20세 이상) 발달장애인
 -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우선 선발(고도비만, 중복장애, 문제행동 등)
 - 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 · 입학대상 심사 선정
- 입학정원 : 센터당 30명 이상, 학업기간 5년
 - ※ 1차년도 시범운영 후 그 결과를 분석·문제점 보완 후 정원 확대방안 검토
- 교사인력
 - 수업기준 학생 3명당 교사 1명이상(자원봉사자 등 별도)
 - 특수교사, 재활교사,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, 교육 및 돌봄의 전문성 확보
- 센터규모 및 운영방법
 - 센터당 전용면적 500m² 이상(수업실 당 학생 6명이하 권고)
 - 운영방법 : 자치구 공모 (재정부담 비율, 인접시설 활용도, 발달장애인 수 등 고려)

추진실적

- 「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」 구성('15.5월) 회의개최 : 5회
 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규모, 이용시간 등 세부사항 협의
- 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공모」 추진 2개구 선정 사업비 재배정
- 예산현황 : 348,300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|--------|----|
| 348,300 | - | - | |

향후계획

- 평생교육센터 운영단체 선발 및 조성(자치구) : '15.11월~12월

4.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(보호고용, 직업적응훈련 등)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·자립 도모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81조
- 일반현황 : 시설 122개소, 근로장애인 3,877명
- 근로사업장 12개소 / 보호작업장 110개소
- 내 용 :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추진실적

- 신규 보조금 지원 직업재활시설 4개소 확충 : '15.3월, 7월, 9월
- 행복을파는장사꾼(강서구) / 라피드보호작업장(영등포) /
빛나눔보호작업장(은평구) / 소망드림복지센터(강동구)
- 근로장애인 고용 미충족 시설 지도점검 실시 : '15.4월
- 미충족 시설 5개소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고용하여 개선조치 완료
- 시립 번동보호작업장 재위탁 협약 체결 : '15.5월
- 예산현황 : 27,375,266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27,375,266 | 26,488,210 | 96.8% | |

향후계획

-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환경 분석 및 전수조사 : '15.11~12월
-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기능보강(10개소) : '15.11~12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: 김상두 ☎7464 담당 : 권은경 ☎7465

5.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시설 건립, 일상능력 향상 및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기반 강화

사업 개요

- 근 거 : 장애인복지법 제59조(시설설치) 및 제81조(비용보조)
- 위 치 : 성북구 화랑로 134 (대지면적 703m²)
- 규 모 : 1,400m² (지상3층/지하1)
 - 지하1층(477.27m²) : 주차공간, 창고
 - 지상1층(303.13m²) : 보호작업장, 휴게/전시 공간
 - 지상2층(313.61m²) : 직업재활, 사회적응,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
 - 지상3층(316.37m²) : 단기거주시설(긴급돌봄서비스 제공), 사무실, 식당
- 위탁기간 : 2014.11.1. ~ 2016.12.31.(사회복지법인 승가원)

추진실적

- 직업재활시설 땅콩새싹 및 카페음료 판매매출(1층) 32백만원
- 자립지원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(2층) 2,624건
- 인권침해 장애인 피해쉼터 운영 및 단기보호(3층) 1,680명
- 예산현황 : 607,208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
| 607,208 | 463,839 | 76.4 | - |

향후계획

-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 및 생산품목 다변화 : '15.11~12월
- 땅콩나물 홍보를 위한 레시피 개발 및 시식회 개최 : '15.11~12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 : 김상두 ☎7464 담당 : 권은경 ☎7465

6.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 용역에 관한 상담, 홍보,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

사업개요

- 근 거 :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
- 위 치 : 양천구 목동서로 33
- 운영법인 : (사)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(김영화)
- 위탁기간 : '15.4 ~ '20.3(5년)
- 사업내용
 - 장애인생산품 상담·판촉, 인터넷쇼핑몰 운영, 조달사업
 - 전시코페사업,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사업

추진실적

-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: 8,343백만원
- 행복플러스가게(카페) 운영 및 매출 : 7개소, 814백만원
- 직업재활시설 디자인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(경영지원센터) : 53건
- 예산현황 : 781,222천원(재원부담 : 국비 8%, 시비 92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
| 781,222 | 628,617 | 80.5% | - |

향후계획

- 운영 사업비 지원 및 운영성과 분석 등 : '15.12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 : 김상두 ☎7464 담당 : 최숙현 ☎7467

7.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, 인권보호,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행복 플러스 가게 운영 등 장애인 관련 복합서비스 제공 시설 운영

사업개요

- 근 거 : 장애인복지법 제59조
- 위 치 : 강남구 도곡로 416(지상6,지하1, 연면적 1,381㎡)
 - 행복플러스가게·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시설,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, 장애인인권센터, 그룹홈지원센터, 경영지원센터 입주
- 운영법인 : (사)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
- 사업내용
 -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진행(IT 교육장, 직업체험장 등)
 -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입주시설 운영편의 제공 및 시설관리

추진실적

- 직업재활 프로그램 교육 : 바리스타 15명, 콜센터 상담원 30명
- 입주시설 운영편의 제공 및 시설 관리 : 인권센터 외 3개소
- 예산현황 : 327,777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
| 327,777 | 327,777 | 100 | - |

향후계획

-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평가 : '15.12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 : 김상두 ☎7464 담당 : 최숙현 ☎7467

8. 장애인 일자리통합 지원센터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특성을 고려한 취업상담·알선, 구인업체 발굴, 취업 전 현장 훈련, 사례관리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
- 위 치 : 강남구 도곡로 416(행복플러스센터 3층)
- 운영법인 : (사)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
- 사업내용 : 일자리 개발, 취업알선, 구인기업·구직장애인 상시관리 등

추진실적

- 취업상담 및 알선 서비스 제공 : 11,283명
 - 상담 6,865명, 알선 4,418명, 취업 852명
- 장애학생 취업프로그램 : 상담 368명 중 203명 참여
 - 직장체험 108명, 인턴십 95명, 바리스타 양성 1기 8명 수료 등
- 취업박람회 개최(4.29) : 참여업체 256개, 방문 8,137명, 취업 335명
- 예산현황 : 1,189,618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1,189,618 | 1,189,618 | 100 | - |

향후계획

-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사업평가 : '15.12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: 홍순길☎2133-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 : 김상두☎7464 담당 : 최숙현☎7467

9. 장애인 일자리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으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
- 참여대상 :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(고 3학년생, 전공과정 학생 포함)
- 운영인원 : 총 1,256명

| 구 분 | | 근로시간 | 근로형태 | 계획인원 | 비 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일자리 | | 주5일 (40시간) | 행정도우미, 전담지원도우미,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| 535 | 국비30, 시비35 구비35 |
| 복지 일자리 | | 주14시간이내 (월56시간) | 사무보조, 보육도우미, 실버케어 등 | 606 | " |
| 특화형 일자리 | 시각장애인 안마사과견 | 주5일 (25시간) | 고령노인 안마서비스 | 105 | 국비80, 시비20 |
| | 방달장애인 보호요원차 보조일자리 | 주5일 (25시간) | 식사도우미, 이동(보행)도우미, 심부름, 말벗하기 등 | 10 | 국비30, 시비35 구비35 |

추진실적

-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배치 : '15.1월
- 장애인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(1~4분기) : '15.09월
- 예산현황 : 8,702,328천원(재원부담 : 국비 30%, 시비 35%, 구비 35%)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8,702,328 | 8,156,670 | 93.7% | - |

향후계획

-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산, 유공자 표창 등 : '15. 12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 : 김상두 ☎7464 담당 : 최숙현 ☎7467

10. 장애인 영농사업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 영역을 1차산업(농업) 분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직업선택권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9조, 제21조
- 소 재 지 :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532의 2필지
- 지원단체 :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(대표 : 윤영노)
- 영농작물 : 접목선인장, 삼각주, 업체류, 종묘식재

추진실적

- 발달장애인 가족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 직업재활 프로그램 연계
 - 장애인 영농가족캠프 운영 6회 160여명 참여('14. 12월~'15. 5월)
-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훈련 및 근로장애인 고용 20명(근로자 10, 훈련생 10)
- 장애인 영농사업단 민간위탁 추진 : '15.6~7월
 -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“조건부 적정”
 - ※ 조건 : 당초 협약 체결 잔여기간만 민간위탁 수의계약 체결하고, 위탁기간 만료시 공개모집
- 장애인 영농사업 운영평가 실시 : '15.9월
 - 평가결과 : 운영실적을 평가하기엔 운영기간이 짧으나 농업직업재활의 필요성이 충분하며, 시설의 설비요건 보완이 필요함
- 예산현황 : 140,408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140,408 | 140,408 | 100 | |

향후계획

-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 상정(시의회) : '15.11월
- 시설설치를 위한 임대차 법률자문 및 임대계약 체결 : '15.11~12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: 김상두 ☎7464 담당 : 권은경 ☎7465

11.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시설 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주거시설 서비스 제공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81조(비용보조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
- 총시설수 : 44개소

(2015. 9월 현재)

| 구 분 | 계 | 장애유형별시설 | | | |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| 장애 영· 유아시설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지체 | 시각 | 청각·언어 | 지 적 | | |
| 시설수(개) | 44 | 3 | 3 | 1 | 13 | 22 | 2 |
| 입소 이용자수 | 2,876 | 171 | 124 | 34 | 843 | 1,620 | 84 |
| 인원 종사자수 | 1,842 | 102 | 88 | 27 | 503 | 1,054 | 68 |

- 종사자(현원)/입소자(현원) : 1,842명/2,876명(등록장애인 398,908명의 0.72%)
- 지원 내 용 :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

□ 입소 대상 및 지원기준

- 무료입소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, 입양기관 보호아동
- 실비입소 : 장애인복지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자

□ 2015년 추진실적

-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등 지원('15. 9월) : 69,643백만원
- 중증와상장애인 돌봄 인력 추가 지원 : 총 10개 시설 55명
- 예산현황 : 90,386,207천원(재원부담 : 국비 50% 시비 50%)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90,386,207 | 64,643,304 | 77.1 | |

□ 향후계획

- '16년도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른 대책 검토
-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예산 반영 여부 등

12.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

추진배경 및 목적

-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인프라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서울시 인권기본계획(시장방침 제220호, '13.8.4)
- 사업대상 :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 희망자
- 사업목표 : '17년까지 600명 탈시설, 자립시설 111개소 확충
- 사업내용
 -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체험홈 확충 : 53개소(230명)
 - 자립생활주택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개선 및 확충 : 58개소(255명)
 - 시설퇴소자 정착금 및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: 115명

추진실적

- 장애인 자립생활 인프라 구축
 - 체험홈, 자립생활주택, 공동생활가정 등 291개소 운영
 - 시설 퇴소자 정착금 증액 확대 지원(10백만원→12백만원)
 -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: 평균 7,500만원
- 발달장애인 특화 탈시설 모형개발
 - 용역기간 : 2015. 7.7~2015.12.31
 - 용역금액 : 67,272천원
 - 용역내용 : 발달장애인 탈시설 자립모델 개발
 - 수행기관 : 한국장애인개발원(대표자 : 황화성)

향후계획

- 자립생활체험홈(12), 자립생활주택(2) 총 14개소 확충 : '15.11~12월

13.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동안 보호하며, 장애인 가족기능의 회복을 도움.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
- 사업내용

| 이용자 기준 | 종사자 지원 | 운영시간 | 개소수 | 이용현원 |
|------------|--------|--|------|--------|
| 개소당 10인 이상 | 3인 | 평 일 : 9:00~18:00 (토요일 : 9:00~12:00) | 111개 | 1,545명 |

- 지원대상 : 신고시설 중 법인운영시설

추진실적

- '15년 주간보호시설 정기평가 용역계약 체결('15. 4. 8)
 - 보조금 지원시설 정기 평가를 통해 시설서비스 향상 개선
- '15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교육 용역 추진('15. 6. 4~11. 30)
 - 신입, 경력, 시설장별 차별성 있는 직무교육 제공하여 종사자 역량 강화
- 15년 '장애인주간보호 보조금 지원시설 2개소 신규 선정('15. 9. 25)
- 최종증 다수이용시설 5개소 재지정('15. 10. 1~'16. 9. 30)
- 예산현황 : 12,919,790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12,919,790 | 12,589,155 | 97.4 | |

향후계획

- 분야별 시설 종사자 교육 추진(신입, 경력, 시설장, 인권) : '15. 11~12월
- 시설별 보조금 집행 실적 조사 : '15. 12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복지정책팀 : 김홍식 ☎7442 담당 : 김용만 ☎7446

14.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일정 기간 보호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기능의 회복을 도움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
- 사업내용

| 이용자 기준 | 종사자 지원 | 운영시간 | 개소수 | 이용현원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개소당 10인 이상 | 5인(보조인력 1명 포함) | 24시간 | 38개소 | 425명 |

- 지원대상 : 신고시설 중 법인운영시설

추진실적

-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('15. 3월)

- ▶ 광역시·도 단기거주시설 4개소(서울, 경기, 전남, 경북) 시범 설치·운영
- ▶ 시설지원액 : 개소 당 90백만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
- '15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교육 용역 추진('15. 6. 4~11. 30)
- 긴급돌봄 및 최종증 다수이용시설 5개소 재지정 ('15. 10. 1~'16. 9. 30)
- 예산현황 : 6,648,882천원(재원부담 : 국비 0.7%, 시비 99.3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6,648,882 | 5,634,374 | 84.7 | |

향후계획

- 분야별 시설 종사자 교육 추진(신입, 경력, 시설장, 인권) : '15. 11~12월
- 시설별 보조금 집행 실적 조사 : '15. 12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거주시설팀 : 이병구 ☎7469 담당 : 박진수 ☎7457

15.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유형과 장애정도, 욕구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보조기기 적용이 다름에 따라 체계적인 보조공학 서비스를 활용하여 적합한 보조기구 지원(맞춤제작·개조, 임대, 수리 등)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

사업개요

○ 사업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68조(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)
- 행정1부시장 방침 제521호 (2008. 9. 23)

- 위탁기관 : 3개소(위탁기간 : 2014.1.1 ~ 2016.12.31)

| 센터명 |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|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노원센터 |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서센터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탁법인 | 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성모회 |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|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|
| 위치·면적 | 강동구 고덕동 317-24 (223.48㎡) | 노원구 상계동 771 (183.48㎡) | 강서구 방화동 452-5 (179㎡) |
| 지원인력 | 6명 (보조공학사 3, 작업치료사 2, 사회복지사 1) | 5명 (보조공학사 3, 작업치료사 1, 사회복지사 1) | 5명 (보조공학사 3, 작업치료사 1, 사회복지사 1) |

* 내용 : 장애유형에 맞도록 보조기기 맞춤 제작·개조·대여·수리지원

추진실적

-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서센터 개소식('15. 2. 11)
-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상반기 운영위원회의 개최('15. 5. 22)
- 서비스 제공실적 : 전체 7,329건(대여, 제작 및 지원, 후원연계, 상담평가 등)
- 예산현황 : 681,084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681,084 | 678,759 | 99.7 | |

향후계획

-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서비스지침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 : '15. 11월
-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: '15. 11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거주시설팀 : 이병구 ☎7469 담당 : 박진수 ☎7457

16.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지원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설치) 및 제81조(비용보조)
- 사업대상 :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독립적 생활준비자
- 사업내용 : 자립생활지원, 사회적응지원, 지역사회와의 유대지원 등
- 지원시설 : 181개소(이용자 738명, 종사자 178명)

| 구분 | 시설수 | 입주자격 | 종사자배치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거주형 | 172개소 | 자립생활곤란으로 다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| 1개소당 1명 |
| 자립형 | 9개소 | 자립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한 장애인 | 2~3개소당 1명 |

○ 2015년 예산 : 8,608백만원

- 시설당 인건비 : 사회복지시설인건비 보수지급 기준표 의거
- 시설당 운영비 : 개소당 연 6,984천원
- ※ 자립형의 경우 운영 개소수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급

| 구분 | 자립형(1개운영) | 자립형(2개운영) | 자립형(3개운영)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지원기준액 | 6,984천원×70% | 6,984천원×180% | 6,984천원×250% |

추진실적

-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승급제도 마련('15.4)
-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매뉴얼 마련('15.5)
- 무연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추가 인력지원 시설 지정·지원('15.7)
-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규 선정 3개소('15.10)

〈 예산 집행현황 〉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8,607,636 | 8,225,730 | 95.5 | |

향후계획

- 신규 선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(3개소) : '15.11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거주시설팀 : 이병구 ☎7469 담당 : 최인섭 ☎7364

17. 거주시설(생활시설)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19조(사회적응훈련), 제35조 및 53조(자립생활지원)
- 지원대상 :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2,876명
- 추진방법 : 전환서비스지원센터(서울시복지재단)를 주축으로 자립생활주택 연계운영
- 추진체계 : 대규모(의존, 격리) → 소규모(일상생활 훈련) → 자립(지역사회 통합)



○ 역할구분

- 서울시 : 사업계획수립, 위탁사업자 협약체결,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
- 자치구 : 사업운영사업자 행정·회계 분야 지도 감독, 지역복지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지원
- 전환서비스지원센터 : 전환서비스 대상 발굴, 입소자 선정 배치, 수탁기관 선정 및 교육
- 위탁사업자 : 주택 확보, 주거 편의시설 정비, 생활교사 채용·교육,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 개발

□ 추진실적

- 자립희망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 상담(현장) : 23명
- 운영사업자 및 입주자 역량강화 교육 : 18회
- 자립생활주택 소방 안전 점검 : 55개소
- 지역사회 자원연계 : 주거복지지원센터, 소방재난본부 연계 등
-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55개소 운영(96명)
- 자립생활주택 개폐식 방법창 설치 24개소 지원 : '15.7월
- 예산현황 : 1,415,000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1,415,176 | 1,304,037 | 92.1 | |

□ 향후계획

- 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(2개소) : '15. 11월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: 홍순길 ☎2133-7440 장애인거주시설팀 : 이병구 ☎7469 담당 : 최인섭 ☎7364

18. 「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」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·구제·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는,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서울 조성

사업개요

-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
- 구 성 : 총 7명(비상근 센터장 1, 인권변호사 2, 인권전문가 4)
- 위탁기관 : (사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
- 위탁기간 : '13.12.17. ~ '16.12.16.(3년) ※ 개소일 : '14. 2. 13
- 주요업무 : 상담·신고 1644-0420(www.16440420.seoul.kr)
- 인권침해·차별행위 교육·홍보, 상담·사례관리, 조사·구제지원 등

추진실적

-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 교육·홍보 실시('15.3월~)
-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·사례관리 : 총 554건
-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: 총 509건
- 인권침해 의심사례 즉시 현장조사, 법률자문·정보제공 등
-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모니터링 실시(실태조사 등)
- 신망애의집, 송전원 등 기획조사 후 관할 경찰서 고발(폭행, 노동착취, 성추행 등)
- 예산현황 : 317,316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317,316 | 259,987 | 82 | |

향후계획

-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집합교육 실시 : '15.11월
-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상시 인권교육 실시 : 수시

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: 홍순길☎2133-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: 정수효☎7360 담당 : 박지병☎7365

19. 어울림플라자 건립계획(안)

추진배경 및 목적

-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을 활용 어울림플라자 건립, 장애인과 어르신 및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간 마련

건축물 개요

- 추진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- 위 치 :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45-11
- 건축물 규모 : 지상 5층, 지하 1층(총 연면적 7,845 m^2)
- 대상지 면적 : 6,683 m^2 (제3종 일반주거지역)
- 관리상태 : 건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('15년도)
- 건축물 특징
 - 3개층 수평증축 후 동일규모 건물을 신축하고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, 다시 2개 층 수직증축한 덧댄 건축물
 - 건물 기둥이 많음(소규모 단위 개발, 대강당, 공연, 체육시설 등 부적합)

추진실적

- 소유권 이전(한국정보화진흥원→서울시) : '15. 6월
- 예산현황 : 200,000천원(재원부담 : 시비 100%)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200,000 | 167,357 | 69.7 | |

-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('15.10.13) : 적정

향후계획

-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
 - 공공개발센터에서 주차장 및 대상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
 - ※ '15년 타당성 용역 관련 예산 1억 재배정예정(장애인복지정책과→공공개발센터)

2015년 주요업무보고

2015. 11. 19.

장애인 자립 지원과



1.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

추진배경 및 목적

-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사업대상 : 1~3급 장애인(소득기준 없음, 6세~65세미만)
- 대상인원 : 월 14,290명(국비 12,370명, 시비추가사업 1,920명)
- 사업내용
 - 지원체계 :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(바우처 제공)
 - 서비스 내용 : 가사,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
 - 지원급여 : 등급에 따라 월 48시간~742시간(국고48~392, 시비40~350)
- '15년 예산 : 149,746백만원(국50%, 시35.5%, 구14.5%)

'15년 추진실적

-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자 수 : 13,880명
 - 국고보조 : 11,880명, 시비추가 : 2,000명

〈 예산현황 〉 - 국비 50%, 시비 35.5%, 구비 14.5%

(단위 : 백만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149,746 | 129,780 | 86.7 | |

향후계획

- 활동지원 제공기관 운영현황 점검 평가 : '15. 12월

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: 이종만 (2133-7470) 자립정책팀장: 김재창 (2133-7472) 담당: 서이수 (2133-7473)

2.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중증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·결정토록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을 통해 보다 만족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53조(자립생활지원)
- 사업기간 : '13년 1월 ~ '15년 12월(3년간)
- 운영주체 :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(11), 단체(23)로 지원 선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
- 지원절차 : 공고 ⇒ 신청접수(구) ⇒ 서류심사(사구) ⇒ 최종심사 및 선정(시)
- 사업내용 : 동료상담, 자립생활기술훈련, 정보제공, 권익옹호, 활동보조인 파견 등
- '15년 예산 : 3,730백만원(국 420백만원, 시 3,310백만원)

※ 국고지원사업(150~180백만원, 7개소) : 국비 40%, 시비 60%

※ 시비지원사업(50~96백만원, 27개소) : 시비 100%

'15년 추진실적

- 대상 장애인 수 : 4,270 명
- 서비스 제공 실적 : 24,000 건
 - 동료상담 4,320건, 자립생활 기술훈련 1,720건, 권익옹호 1,680건, 정보제공 16,280건

향후계획

- 보조금 상·하반기 정산 및 집행 점검 : 반기별
-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평가 결과 분석: ' 15. 11월

3.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지역사회내 장애인에 대한 각종상담 및 재활치료,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증진 도모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 81조(비용의 보조)
- 시설현황

| 계 | 시 립 | 구 립 | 법 인 직 영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45개 복지관 | 9개 복지관 | 13개 복지관 | 23개 복지관 |

○ 주요사업

- 상담지도 및 사회심리재활사업, 의료재활, 교육재활사업
- 직업재활사업, 재가장애인 복지사업, 홍보계몽사업
- 정보화제공사업,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

'15년 추진실적

- '15년 장애인복지관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: '15. 1. 15
 - '15년 장애인복지관 사업안내 및 중점사업 추진 등 논의

○ 장애인복지관 이용실적

- 45개 복지관에서 재활치료, 직업재활, 취미 등 연 8,713개 프로그램 운영 중.
- 장애인복지관 별 이용실적은 일 평균 782명, 45개소 총 3,535천명임

○ 이동식이불빨래방 운영 및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실시

- 이동식이불빨래방 : 1,850명(장애인 1,312 어르신 538) 5,150채 이불빨래 세탁지원
- 돌봄가족 휴가제 : 4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가족 1,275명 휴가 지원

〈 예산현황 〉 - 시립(시비 100%), 법인 및 구립(시비 90%, 구비 10%)

(단위 : 백만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64,622 | 64,213 | 99.4 | |

향후계획

-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지원 및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 지속 제공

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(2133-7470) 재가복지팀장 김지형(2133-7450) 담당 :김종민(2133-7451)

4.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시·청각장애인의 학업을 도와주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, 시각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 증진 도모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81조
- 설치운영 : 7개소(시각 6, 청각 1)
- 주요사업
 - 시·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제작 및 보급사업
 - 시·청각장애인용 재활정보제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

'15년 추진실적

- 도서제작보급사업 : 111,980명, 149,750건 제공
- 교육지원사업 : 19,070명 53,930건 제공
- 지역사회개발사업 : 371,200명, 408,050건 제공
- 청각학습지원센터 개원 : '15.7월(서울청각학습지원센터)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백만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5,207 | 4,927 | 94.6 | |

향후계획

-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점검 '15. 12월

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(2133-7470) 계가복지팀장 김지형(2133-7450) 담당 :김종민(2133-7451)

5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 의료재활시설(병·의원) 운영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최선의 서비스 제공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81조
- 사업대상 : 서울재활병원 등 5개소
- 사업내용
 -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제공(외래진료, 재활·입원치료)
- '15년 예산 : 3,492백만원(시비 100%)

'15년 추진실적

-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연인원 286,580명, 장애인 211,920명 (전체 이용자의 75.7%)으로 장애인재활 치료에 기여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백만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3,492 | 3,492 | 100 | |

향후계획

- 장애인의료재활사업 운영 내실화
-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이용률 제고

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: 이종만 (2133-7470) 재가복지팀장 : 김지형 (2133-7450) 담당 : 주영진 (2133-7454)

6.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재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81조
- 사업대상 :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등 6개소
- 사업내용
 - 체력·재활훈련, 사회적응훈련, 축구지도, 동호회 운영 등
- '15년 예산 : 1,846백만원(시비 100%)

'15년 추진실적

- 총 이용자 1,146,120명중 장애인 이용자는 432,320명(전체이용자의 37.7%)으로 장애인 재활체육에 기여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백만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1,846 | 1,837 | 99.5 | |

향후계획

- 시설별 신규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장애인 이용률 향상 추진
- 장애인 재활체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적극참여 독려

7.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청각·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수단인 수화환경 개선을 위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여 청각·언어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 도모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22조, 제81조
- 사업대상 : 서울시수화통역센터 본부 및 25개센터(자치구별 1개소)
- 사업내용
 - 청각·언어장애인 상담지도(개별 및 일반상담 접수, 의료, 직업), 사후관리
 -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, 교육(수화, 한글, 컴퓨터) 및 복지증진
- '15년 예산 : 5,180백만원(시비 100%)

'15년 추진실적

- 운영실적 : 수화통역·상담·교육 등의 서비스 218,960건 제공

(단위 : 건)

| 합계 | 통역 | 상담 | 수화교육 | 행사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18,964 (100%) | 96,752 (44.2%) | 82,305 (37.6%) | 35,027 (16.0%) | 4,880 (2.2%) |

< 예산현황 > - 시비 100%

(단위 : 백만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5,180 | 5,180 | 100 | |

향후계획

- 수화통역센터 근무실태 점검 : '15. 12월

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(2133-7470) 재가복지팀장 김지형(2133-7450) 담당 :주영진(2133-7454)

8. 장애인연금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.

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

-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(1~2급, 3급 중복장애)
※ '15년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930,000원, 부부가구 1,488,000원

○ 지원내용

-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으로 일정금액을 지급

○ '15년 예산 : 139,748백만원 (국비50%, 시비34%, 구비 16%)

- 총 예산액 : 163,920백만원(구비24,171백만원 포함)
※ 국비 81,960백만원, 시비57,788백만원

'15년 추진실적

- 지원실적 : 월평균 47,620명 지원(지원금액 76,587백만원)
※ 국비 44,909백만원, 시비 31,678백만원

향후계획

-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 인상으로 생활안정 지원
-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
- 장애인연금 지급 사업 정산 : '16. 1월

9. 장애수당 · 장애아동수당 · 시비추가 장애수당 지원사업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 도모

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

- 국비사업(30,707백만원)
 - ▶ 차상위계층 이하 18세 이상 3 ~ 6급 장애인 : 20 ~ 40천원/월
 - ▶ 차상위계층 이하 18세 미만 1 ~ 6급 장애아동 : 20 ~ 200천원/월
- 시비추가사업 : 30천원/월 (11,016백만원)
 - ▶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- ▶ 서울시장애수당 :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○ 장애아동(수당) 지급액

- 장애수당 : 재가 40천원/월, 보장시설 수급자 20천원/월
- 장애아동수당

| 구 분 |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| 차상위계층 | 보장시설수급자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중증장애인 | 월 20만원 | 월 15만원 | 월 7만원 |
| 경증장애인 | 월 10만원 | 월 10만원 | 월 2만원 |

○ '15년 예산 : 41,723백만원

- 국·시비 보조 수당 : 30,707백만원(국비50%, 시비50%)
- 시비 추가 수당 : 11,016백만원(시비100%)

'15년 추진실적

- 지원실적 : 월평균 80,190명 지원(지원금액 29,604백만원)
 - 장애수당 48,270명, 장애아동수당 3,070명, 시비추가수당 28,850명

향후계획

- 장애(아동)수당 수급권자 확대를 위한 신규 대상자 적극 발굴
- 사업 집행결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처리 : '16년 1월

10.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

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

- 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

○ 지원내용

-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혹은 일부 지원
- 장애인보장구 구입 시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% 지원

※ 장애인보장구 관련개정 사항('15.7.1. 시행)

- 의료급여 2종 수급자 : 의료급여기금 85%, 장애인의료비 15% → 의료급여기금 100%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: 국민건강보험 85%, 장애인의료비 15% → 국민건강보험 100%

○ '15년 예산 : 4,260백만원(국비50%, 시비50%)

- 국비 2,130백만원, 시비 2,130백만원

'15년 추진실적

- 지원건수 : 의료기관 51,620건, 장애인보장구 420건
- 지원금액 : 의료기관 3,552백만원, 장애인보장구 68백만원

향후계획

- 장애인의료비 적기지원으로 지연지급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부담 경감
- 장애인의료비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
- 사업 집행결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: '16년 1월

11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 복지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방지 및 편의 시설 보완과 시설의 안전보강, 노후된 장비교체, 부족한 재활장비 구입으로 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, 장애인 자립·재활 능력 향상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
- 시설현황

| 구 분 | 계 |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(개소) | | | |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장 애 인 복 지 관 | 의 료 재활시설 | 재 활 체육시설 | 장 애 인 심부름센터 | 수 화 통역센터 |
| 계 | 83 | 45 | 5 | 6 | 1 | 26 |
| 시 립 | 10 | 9 | | 1 | | |
| 구 립 | 15 | 13 | 1 | 1 | | |
| 법 인 | 58 | 23 | 4 | 4 | 1 | 26 |

○ 사업내용

-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개보수, 장비보강, 기타 차량구매 등

- '15년 예산 : 13,041백만원

□ '15년 추진실적

- 46개시설, 54개사업 집행

< 예산현황 > 국비 7.3% 시비 89.3% 구비 1.2% 자부담 2.2%

(단위 : 백만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13,041 | 10,861 | 83.3 | |

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(2133-7470) 재가복지팀장 김지형(2133-7450) 담당:주영진(2133-7454)

12.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(동대문·관악·도봉·은평)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없는 자치구에 구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지역내 장애인에게 각종 상담, 직업·의료재활 및 인식개선 등 종합재활서비스 제공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59조, 제81조
- 시설명 : 동대문구·관악구·도봉구·은평구 장애인 복지관
- 사업내용 : 구립장애인 복지관 건립(4개소)
-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 건립현황
 - 위치 : 동대문구 무학로 16길(용두동 255-69)
 - 규모 : 부지면적 991.7 m^2 , 건축연면적 8,160.9 m^2 (지하4층/지상10층)
※ 동대문장애인복지관 : 1·2·3·10층 사용(2,651 m^2)
 - 사업기간 : '09. 9 ~ '16. 3
 - 총사업비 : 21,125백만원(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형개발사업으로 추진)
-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현황
 - 위치 : 봉천동 1660-4(현 시설관리공단 건물)
 - 규모 : 지면적 1,300 m^2 , 건축연면적 2,459 m^2 (지하1층/지상7층)
 - 사업기간 : '11. 1 ~ '17. 1
 - 총사업비 : 7,732백만원
· 복권기금 1,647백만원, 시비 1,543백만원, 구비 4,542백만원
- 도봉구 장애인복지관 건립현황
 - 위치 : 도봉구 마들로 664-17(도봉동 636-16)
 - 규모 : 부지 3,306 m^2 , 연면적 2,120 m^2 (지하1층 / 지상4층)
 - 사업기간 : '13. 8 ~ '17. 5
 - 총사업비 : 5,907백만원
· 시비 3,809백만원, 구비 2,098백만원
- 은평구 장애인복지관 건립현황
 - 위치 : 은평구 녹번로 1길 13(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)
 - 규모 : 부지 1,662 m^2 , 연면적 2,400 m^2 (지하1층 / 지상4층)

- 사업기간 : '15. 5 ~ '18. 6
- 총사업비 : 8,003백만원
 - 국비 2,000백만원, 시비 2,613백만원, 구비 3,390백만원

○ '15년 예산 : 1,500백만원

- 관악구 400백만원, 도봉구 1,000백만원, 은평구 100백만원

'15년 추진실적

○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 건립

-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중

○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

- 당초 신축에서 구립시설 리노베이션으로 변경 : '15.3월
- 건립방법 변경에 따른 투자심사 재심의 : '15.5월

○ 도봉구 장애인복지관 건립

-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착공 : '15.10월

○ 은평구 장애인복지관 건립

- '15. 2월 : 장애인 복지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

< 예산현황 > - 시비 100%

(단위 : 백만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1,500 | 1,500 | 100% | |

향후계획

○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: '16. 3월 준공

○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

- '15. 12월 :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

○ 도봉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: '17. 5월 준공

○ 은평구 장애인복지관 건립

- '16. 3월 : 설계 발주

13.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이동편의 약자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 제6조
- 사업대상 :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원,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

○ 설치목표

| 2014년 | '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78.4% | 80.0% | 81.5% | 83.0% | 84.5% | 86.0% |

○ 사업내용

-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 및 정비대상 시설물 확충 정비
-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(시, 구) 운영 : 26개 센터 82명
-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(살피미) 사업 운영 : 120명

- '15년 예산 : 1,300백만원(시 센터 :사비 100%, 구 센터 : 사비 50%, 구비 50%)

□ '15년 추진실적

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안내 책자 제작 배부 : 500부
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 : 10,139건
-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점검 : 6,385개소

〈예산현황〉 - 시 센터 :사비 100%, 구 센터 : 사비 50%, 구비 50%

(단위 : 백만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 고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|
| 1,300 | 1,289 | 99.2 | |

□ 향후계획

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 : '15. 11 ~ 12월
-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시정조치 : '15. 11 ~ 12월
-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: '15. 11 ~ 12월

작성자 장애인차량지원과장 : 이종만 (2133-7470) 편의시설팀장 : 이미영 (2133-7460) 담당 : 김경식 (2133-7461)

14.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(집수리) 사업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장애인의 가정내(외) 일상생활과 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

사업개요

- 근 거 :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8조(주거생활지원) 제2항
- 대상가구 : 장애인 가구 110가구
- 대상기준 : 장애등급 1~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
- 선정기준 : 장애등급 높은 순, 소득수준 낮은 순,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
- 선정방법 : 자치구 선정+현장실사+자문회의 → 최종 확정
- 사업내용 :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, 기타편의시설 설치
- 사업비 : 500백만원(시비 100%)

'15년 추진실적

- 주거편의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실시 : '15. 1. 19.
- 주거편의지원사업 희망가구 신청접수 : '15.1.19~2.27
- 25개 자치구 장애인가구 219가구 신청(신청장소 : 동 주민센터)
-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가구 현장실사 : '15. 3~5월
-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 선정 : '15. 6. 26.
- 주거편의지원사업 선정가구 개선안 마련 : '15. 7월
-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 : '15. 8~11월

향후계획

- 수혜가구 보완공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: '15. 11~12월

15. 서울시각장애인 생활·이동지원센터(장애인심부름센터) 운영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시각 및 신장장애인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

사업개요

- 근 거 :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(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)
- 이용대상 : 시각장애인 1~3급, 신장장애인 1~2급
- 운영주체 : (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(대표 : 남산)
- 운영대수 : 158대('15년 신규차량 5대 포함)
- 이용방법 : 즉시콜(02-2133-7462)
- 이용요금 : 5km까지 2,000원, 5km초과시 500m당100원/100초당100원
- 사 업 비 : 9,030백만원(시비 100%)

'15년 추진실적

- 생활·이동지원센터 차고지 및 운전원 근무실태 점검 : '15. 3~4월
- 생활·이동지원센터 시/구 합동 지도 점검 : '15. 5월
- 센터 운전원 처우개선을 위한 T/F 구성·운영 : '15. 5~8월
- 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: '15. 6~9월
- 콜 관제시스템 교체 및 관제프로그램 재개발 : '15. 6~11월
- 노후차량 교체(25대) 및 신규차량 구입(5대) : '15. 10월

향후계획

- 콜 관제시스템 개발 및 카드단말기 설치 완료 : '15. 11월

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: 이종만 (2133-7470) 편의시설팀장 : 이미영 (2133-7460) 담당 : 이단희 (2133-7462)

2015년 주요업무보고

2015. 11. 19.

자 활 지원 과

1.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전문 상담원이 거리노숙인을 찾아가 상담·시설입소를 유도하고,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원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
- 사업내용
 - 종합지원센터(2개소), 일시보호시설(3개소), 위기대응콜 1600-9582
 - 정신건강팀 운영, 서울역 무료급식장 '따스한 채움터' 운영
- 2015년 예산 : 6,498,682천원(국비 93,000, 시비 6,405,682)

추진실적

- 시설별 1일 평균 이용인원

| 계 | 다시서기 | 브릿지 | 옹달샘 | 햇살 | 만나샘 |
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|-----|
| 513 | 266 | 64 | 82 | 63 | 38 |

- 위기대응콜 : 3,173건(일평균 12건접수) ※ 현장출동 467, 시설보호 247, 단순상담 2,459
- 정신건강팀 : 상담 3,666건(입원 355, 시설입소 71, 주거지원 107, 단순상담 2,904, 기타 229)
- 따스한 채움터 : 24개 단체 참여 1일 3식, 1일 평균 710명
- 서울시-서울시경, 노숙인협회 거버넌스 협약 체결(7.31)

〈 예산현황 〉 - 국비 1.5%, 시비 98.5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6,498,682 | 5,899,532 | 90.8 | |

향후계획

- 서울시-서울시경, 노숙인협회 민·관·경 거버넌스 회의 : 매월 1회
-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지속 추진 : '15.11월 ~ '16.3월

작성자 자활지원과장: 김종석 (☎2133-7480) 자활정책팀장: 배기선 (☎2133-7482) 담당: 이진산 (☎2133-7484)

2. 노숙인 주거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노숙 위기계층 및 거리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단기 주거지원 및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조속한 거리생활 탈피 및 사회복귀 지원
- 매입임대주택,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지원을 통해 시설거주 노숙인과 초기노숙인의 탈노숙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
- 사업내용 : 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에 월세 지원 및 사례관리
 - 단기주거지원 : 월세(평균 3~4개월), 생활용품, 사례관리 지원
 - 장기주거지원 : 공동생활가정 임대보증금 지원(2천만원 이내), 매입임대 지원
- 2015년 예산 : 650,465천원(시비 100%)

추진실적

- 임시주거지원
 - 지원실적 : 고시원·쪽방 등 임시주거지원 269명
 - 사례관리 : 공공·민간일자리 취업 106명, 수급신청 69명 등 175명 자립지원
- 장기주거지원
 - 공동생활가정 : 11호(11명) 입주 지원(열린여성센터에서 여성 지원주택으로 운영)
 - 매입임대주택 : 36호(37명) 입주 지원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650,465 | 450,465 | 69.3 | |

향후계획

- 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협약체결(서울노숙인시설협회) : '15.12월

작성자 자활지원과장 : 김종석 (☎2133-7480) 자활정책팀장 : 배기선 (☎2133-7482) 담당 : 이진산 (☎2133-7484)

3. 노숙인 의료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질병에 취약한 노숙인에 대해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를 통해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

사업개요

○ 사업근거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
-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

○ 사업내용

- 노숙인 의료 진료비 지원
- 무료진료소 (서울역, 영등포) 운영, 결핵검진, 독감백신 접종, 건강검진 등

- 2015년 예산 : 4,364,087천원(시비 100%)

추진실적

○ 노숙인 의료지원 실적

- 진료비 지원 : 29,569건 28억원('15년 예산 36억)
-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실적 : '14년(780건) → '15년(891건, 9월말)
- 결핵검진 : 2,565명 검진[상반기(4월) 1,828명, 하반기(10월) 737명]
- 독감예방접종 : 3,800명('15.10.14~11.12)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4,364,087 | 2,698,754 | 61.8 | |

※ '15. 6~7월 메르스 여파로 의료비 지원실적 감소

향후계획

- 노숙인 의료비 4분기 사업비 교부 : '15.12월

작성자 자활지원과장: 김종석 (☎2133-7480) 자활시설팀장: 홍춘식 (☎2133-7492) 담당: 김영익 (☎2133-7493)

4. 노숙인 일자리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적절한 일자리와 안정적 수입 제공으로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며, 근로능력 미약계층의 생계 유지를 지원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- 사업내용 : 일자리 지원 1,421명('14년) → 1,650명('15년)
 - 공공일자리(공공, 특별자활) 지원 : 950명
 - 민간일자리 알선 지원 : 700명
- 2015년 예산 : 8,159,326천원(시비 100%)

추진실적

- 노숙인 일자리 지원현황

| 구 분 | 계 | 공공일자리 | | 민간일자리 취업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특별자활 | 일자리 갖기 등 | |
| 참여인원(명) | 1,707 | 481 | 402 | 824 |

※ '15년 목표(1,650명) 대비 : 103%(1,707명) 초과 달성

- 거리노숙인 공동작업장 운영 : 2개소('14년) → 9개소('15년) 365명

※ '15년 목표(12개소 400명)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8,159,326 | 7,154,177 | 87.7 | |

향후계획

-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회 : '15.12월

작성자 | 자활지원과장 : 김중석 (☎2133-7480) | 자활정책팀장 : 배기선 (☎7482) | 담당 : 나종택, 김은희 (☎7483, 7488)

5.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생활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정기적 안전점검 강화,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

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- 사업내용 : 5개 밀집지역 3,681명 주민생활 및 편의시설 지원
 - 편의시설(6개소) 및 공동작업장(2개소) 운영, 집수리사업, 후원연계 등
 - 기타 소방·전기·가스시설, 전기장판 등 정기적 시설 안전점검
- 2015년 예산 : 1,010,677천원(시비 100%)

추진실적

- 돈의동 쪽방 생활개선 프로젝트 추진
 -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 선정('15.3.24.)
- 상반기 전기·가스 시설물 안전 점검(4월) : 617개 전수 점검
- 호텔교체 물품 활용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
 - 참여기업 : 특급호텔 11개사, 산하 비즈니스 호텔 2개사(협약식 : '15.10.13.)
-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
 - 행정지원 : 6,557명, 의료지원 : 9,904명, 생필품 등 지원 : 106,261건 등

< 예산현황 >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1,010,677 | 968,952 | 95.9 | |

향후계획

- 동자동 쪽방촌 저가 쪽방 입주 : '15.11월말
- 창신동 쪽방촌 생활편의시설 완공·입주 : '15.11월말

작성자 | 자활지원과장: 김종석 (☎2133-7480) | 자활지원팀장: 최정수 (☎2133-7489) | 담당: 기재일 (☎2133-7790)

6.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시설 운영 지원, 자활프로그램 및 기능 보강 지원 등으로 자활·자립 유도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
 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(비용의 보조)
 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(비용의 지원)
- 사업내용
 - 종사자 인건비, 시설 운영비, 입소자 급식비 지원
 -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원
 -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·보수 및 소방시설 보수 지원 등
- 2015년 예산 : 11,443,716천원(시비 100%)

추진실적

- 상반기 노숙인 자활시설 지도점검 : '15.5월
- 분기별 사업비 운영비 재배정
 - 9,507백만원(법인 : 6,320, 시립 : 3,187)
-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
 - 337백만원(법인 : 156백만원, 시립 : 181백만원)

〈 예산현황 〉 - 시비 10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11,443,716 | 9,858,290 | 86.1 | |

향후계획

- 하반기 노숙인 자활시설 지도점검 : '15.11월

작성자 | 자활지원과장 : 김중석 (☎2133-7480) | 자활지원팀장 : 최정수 (☎2133-7489) | 담당 : 최수미 (☎2133-7491)

7.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알코올중독,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온전하게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

사업개요

○ 사업근거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(비용의 보조)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(비용의 지원)

○ 사업내용

- 종사자 인건비, 시설 운영비, 입소자 급식비 지원
- 알코올 및 정신건강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, 생활 및 의료 지원

- 2015년 예산 : 3,683,503천원(국비 10%, 시비 90%)

추진실적

-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: 2,645백만원

- 시설 기능보강 : 57백만원

- 비전트레이닝센터 생활환경개선(32백만원), 늘푸른자활의집 차량교체비(25백만원)

〈 예산현황 〉 - 국비 10.0%, 시비 90.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3,683,503 | 3,415,561 | 92.7 | |

향후계획

- 시설 운영 관리 및 지도 점검 : '15.11~12월

-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재계약 협약체결 : '15.12월

작성자 | 자활지원과장 : 김종석 (☎2133-7480) | 자활시설팀장 : 홍춘식 (☎2133-7492) | 담당 : 이우승 (☎2133-7494)

8.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

추진배경 및 목적

-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·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

사업개요

○ 사업근거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(비용의 보조)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(비용의 지원)

○ 사업내용

- 종사자 인건비, 시설 운영비, 입소자 급식비 지원
- 노숙인 상담, 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,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

- 2015년 예산 : 6,679,170천원(국비 40%, 시비 60%)

추진실적

○ 은평의마을 시설물 정비 및 생활인 유형별 기능평가 장비 보강

- 철조망 정비 : 5개소 (높이 낮은 곳 2개소, 시설 훼손 3개소)
 - CCTV 추가설치 : 29대, 종합방재실 보강 : 생활실 연결 복합수신기 설치
 - 생활인 검진 및 기능평가 : 은평병원 의사 3명 주 3회, 9월 현재 955명중 701명 완료
- ※ 메르스 여파로 '15. 6~7월까지 생활인 검진 등 기능평가 잠정 중단되었으나 8월부터 재개

< 예산현황 > - 국비 40%, 시비 6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6,679,170 | 5,737,925 | 85.9 | |

향후계획

- 시설 운영 관리 및 지도 점검 : '15.11~12월
- 은평의 마을 생활인 관리 조치기준 마련 : '15.12월

작성자 | 자활지원과장 : 김종석 (☎2133-7480) | 자활시설팀장 : 홍춘식 (☎2133-7492) | 담당 : 김영익 (☎2133-7493)

9.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자치구 지역단위의 자활사업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활사업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광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

* '10.11월 서울광역자활센터 설치(보건복지부 지정)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(광역자활센터)
- 사업내용
 -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(기업) 운영 및 사업 지원
 - 서울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·훈련 사업
 - 자활생산품 홍보, 마케팅, 전시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
- 2015년 예산 : 499,735천원(국비50%, 시비50%)

추진실적

-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운영지원
 - 광역자활근로사업단 5개소, 광역자활기업 3개소
- 경영지원 및 판로개척
 - 경영컨설팅 12건, 자활기업 시설장비 8개소 23백만원 지원

〈 예산현황 〉 - 국비 50%, 시비 50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
| 499,735 | 498,411 | 99.7 | |

향후계획

-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: '15.12월
- 서울의료원 매각에 따른 센터 이전('16년) 계획수립 : '15.12월

작성자 자활지원과장 : 김종석 (☎2133-7480) 자활사업팀장 : 안정기 (☎2133-7495) 담당 : 박근봉 (☎2133-7496)

10.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근로빈곤층에게 집중적·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
- '00년 「자활후견기관」 전국 설치 → '06년 「지역자활센터」로 명칭 변경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(지역자활센터)
- 사업내용
 - 설치현황 : 24개구 30개 지역자활센터(서초구 미설치)
 - 주요사업 : 자활근로사업단 운영,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
 - 사업대상 :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
 - 지원내용 :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, 종사자 복지수당 전액시비 지원
- 2015년 예산 : 6,654,562천원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

추진실적

- 자활근로사업단 301개소, 자활기업 161개소 지원
 - 지원금액 : 6,479백만원(운영비 6,097, 종사자 복지수당 382)

〈 예산현황 〉 -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6,654,562 | 6,479,329 | 97.4 | |

향후계획

- 동절기 안전점검 및 정기 지도점검 실시 : '15.11월
- 자활근로사업단(기업) 공공구매 활성화 등 판로개척 지원 : 연중

작성자 자활지원과장 : 김종석(☎2133- 7480) 자활사업팀장 : 안정기 (7495) 담당 : 권오병 (7497)

11. 자활근로사업

추진배경 및 목적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(자활급여)
- 사업내용
 - 참여대상 : 조건부수급자(의무), 차상위계층(희망)
 - 근로유형 : 근로유지형, 사회서비스형, 인턴·도우미형, 시장진입형

| 유형 | 사업내용 |
|--------|---|
| 근로유지형 | 근로강도가 낮은 지역환경정비 사업, 주로 동주민센터 내 근무 |
| 사회서비스형 |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업으로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주로 지역자활센터나 복지관에서 근무 |
| 인턴도우미형 | 일반 기업체에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업 |
| 시장진입형 | 일정 기간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여야 함,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 |

- 2015년 예산 : 49,806,534천원(국비 60%, 시비28%, 구비12%)

추진실적

-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: 6,122명(수급자 5,380명, 차상위 742명)
 - 근로유지형 2,917명
 - 사회서비스형 1,958명, 인턴도우미형 443명, 시장진입형 804명

〈 예산현황 〉 - 국비 60%, 시비28%, 구비12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49,806,534 | 45,132,837 | 90.6 | |

향후계획

- 보조금 집행관련 지도점검(하반기) : '15.11월

작성자 자활지원과장: 김종석 (☎2133-7480) 자활사업팀장: 안정기 (☎2133-7495) 담당: 권오병 (☎2133-7497)

12. 자활장려금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-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을 지급하는 현행 보충급여 체계를 보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

*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시에 최초 시행(2000년 10월)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(소득인정액)
- 사업내용
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(근로유지형 제외)에 대하여, 근로소득 × 30%를 추가로 지급
- 2015년 예산 : 2,358,400천원(국비 60%, 시비 28%, 구비 12%)

추진실적

- 자활장려금 지급 인원 : 1,338명 지급(9월 현재)

〈 예산현황 〉 - 국비 60%, 시비 28%, 구비 12%

(단위 : 천원, '15.10.31 기준)

| 예산액 | 집행액 | 집행율(%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2,358,400 | 2,358,399 | 100 | |

향후계획

- 조건불이행자 확인 및 관리 : '15.12월

작성자 자활지원과장: 김종석 (☎2133-7480) 자활정책팀장: 안정기 (☎2133-7495) 담당: 박근봉 (☎2133-7496)